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Guide to Rules of Origin, Trade Measures, and Customs Procedures for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Guide to Rules of Origin, Trade Measures, and Customs Procedures for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Contents

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6

FTA 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7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 11

PART 2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미국 법령 체계 및 집행 구조 18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국가 안보 관세 20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23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상계 관세 25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반덤핑관세 27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29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율 적용 구조 및 사례 30

[붙임] 1930년 관세법 제307조 -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32

[붙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대응 관세 34

PART 3

대미 수출 통관 실무가이드

STEP 1.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39**

1-1 HS 코드 분류 39

1-2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40

1-3 원산지 표시 41

1-4 FTA 원산지증명 – 한-미 FTA 활용 41

1-5 서류 작성 43

1-6 수출 신고 44

STEP 2. 입항 전 보안 신고 **44**

2-1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44

2-2 수입자 보안 신고 45

2-3 관세 담보 채권 46

STEP 3. 물품 반입신고 **47**

STEP 4. 납세신고 및 정산 **49**

4-1 납세 신고 49

4-2 정산 및 최종 확정 51

STEP 5. 사후 관리 **55**

[붙임] 사후 검증 56

[부록] 대미 통관 단계별 주요 CBP 서식 58

※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들어가며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양한 통상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원산지와 통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에게는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통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관세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대미 수출 기업의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특혜 원산지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의 주요 통상법과 관세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준비부터 입항 전 보안 신고, 물품 반입신고, 납세신고 및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대미 통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이 변화하는 미국 통상 환경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통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데 유용한 실무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 FTA 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

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 관리는 **특혜 원산지(Preferential Origin)**와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혜 원산지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에 따른 협정 체결국 간 상호 관세혜택이나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와 같은 일방적 관세혜택 등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비특혜 원산지는 덤핑방지관세, 원산지 표시 등 일반 통상정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통일된 국제 규범 없이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두 원산지는 법적 근거와 판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물품이라도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제도 및 원산지 판정 기준 비교

기준			특혜 원산지(한-미 FTA)	비특혜 원산지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수혜 (관세 절감)	원산지 표시, 무역구제조치, 정부조달, 무역통계	
원산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완전생산기준, 원산지재료 생산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이하 PSR)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수행국 기준	
		완전생산 기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 (협정문 제6.1조)	원산지는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성장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 (19 C.F.R. §134.1 준용)	
		품목별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물품의 명칭·특성·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한 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	
증명 방식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권고서식 사용도 가능)	원산지 판단 목적별 요구자료에 따라 상이	
법적 근거			•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 19 C.F.R. Part 10, Subpart R (§§10.1001~10.1034)	일반 수입물품	• 19 U.S.C. §1304 • 19 C.F.R. §134.1(b)
				섬유 및 의류	• 19 U.S.C. §3592 • 19 C.F.R. §102.21

원산지 판정사례 : 같은 물품, 다른 원산지?		미국 CBP 사례번호 : NY N350768 (2025.07.28.)
품명(HS)		양념 배추김치 (HS 2005.99)
사실관계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 후 양념 배추김치로 제조
쟁점		최종 제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참고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1940)
판정결과	**특혜** 원산지 **"한국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C(단, 제0701호*의 것은 제외) 충족 중국산 절인 배추(제07류, 제0704호), 고춧가루(제09류, 제0904호) ⓒ 양념 배추김치(제2005.99호), HS 코드 변경 ⓒ CC 기준 충족 * 제0701호는 신선·냉장 상태의 감자(Potatoes)임
	비특혜 원산지 **"중국산"**	중국산 배추는 한국에서 가공 후에도 여전히 '배추'의 본질 유지 →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핵심 포인트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는 서로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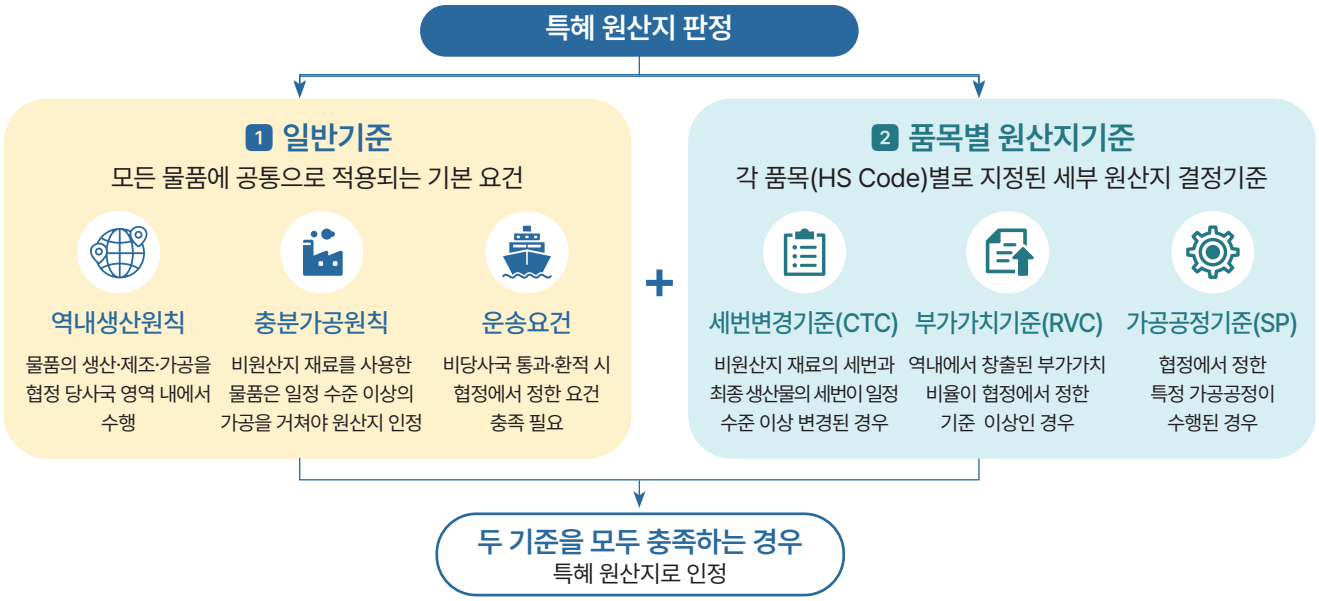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특혜 원산지는 이와 별도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동일한 물품이라도 특혜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비특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FTA 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특혜 원산지 판정은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① 일반기준과 품목별로 지정된 ②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FTA별로 적용 기준과 세부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 기업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혜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특혜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뉘며, 이 중 공통기준에 해당하는 역내생산·충분가공·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입니다.

특혜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구분		내용	
공통기준	완전생산기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수확·채취된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1차 산업 물품이 주된 적용 대상	
공통기준	역내생산원칙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의 당사국 영역 내 수행	필수요건
공통기준	충분가공원칙	• 역내에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경우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한-미 FTA에서는 불인정공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단순희석 공정 등을 규정	필수요건
공통기준	직접운송원칙	한-미 FTA는 협정문상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비당사국 통과·환적 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 충족 시 비당사국 통과·환적 물품에 대해 협정 적용 가능	필수요건
특례기준		• 생산 구조와 공급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등 다양한 특례기준 존재 • 이러한 특례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일부 사용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한-미 FTA의 특례기준과 세부 적용 요건은 협정문에서 확인 가능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기본서』(2026) 참고 재구성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이하 PSR)은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달리,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수출 물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협정별로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 공정 수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table>
<tr><th>항목</th><th>내용</th></tr>
<tr><td>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td><td>•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국에서 가공·제조되어 완제품의 HS 코드가 해당 재료와 달라진 경우, 그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Chapter, 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ub-Heading, CTSH)으로 구분</td></tr>
<tr><td>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td><td>• 제품 가격 중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협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한-미 FTA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순원가법 선택 가능
<table>
<tr><th>계산 방법</th><th>산식</th></tr>
<tr><td>공제법(Build-Down)</td><td>(조정가치 - 비원산지 재료비) / 조정가치 × 100</td></tr>
<tr><td>집적법(Build-Up)</td><td>원산지 재료비 / 조정가치 × 100</td></tr>
<tr><td>순원가법(Net Cost)</td><td>(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비) ÷ 순원가 × 100</td></tr>
</table></td></tr>
<tr><td>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td><td>특정 제조·가공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HS 코드 변경이나 부가가치 비율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공정의 수행 자체가 원산지 판정의 핵심
* 예시 : 한-미 FTA에서는 섬유·의류 분야의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td></tr>
</table>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기본서』(2026) 참고 재구성

(3)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대부분의 교역 품목에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절감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근거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19 C.F.R. §10.1004,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6호*).

원활한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Step 01 수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한-미 FTA의 협정문 부속서 6-가에서 수출 물품의 HS 코드에 부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를 바탕으로 비원산지 재료(수입산 재료)의 사용 여부를 체크하세요.

하나의 품목에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병렬로 제시된 경우, 수출자는 충족 가능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원산지 판정 실시

확인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정 및 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한-미 FTA 협정문 제6.1조)*.

한-미 FTA 협정문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상품

구분	주요 내용
완전생산 상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비원산지 재료 사용 상품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상품인 경우
원산지 재료만 사용한 상품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Step 03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및 보관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협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19 C.F.R. §10.1004,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핵심 체크포인트

✔ 필수 기재사항 ***(협정문 제6.15조)***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시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 품목분류 코드 및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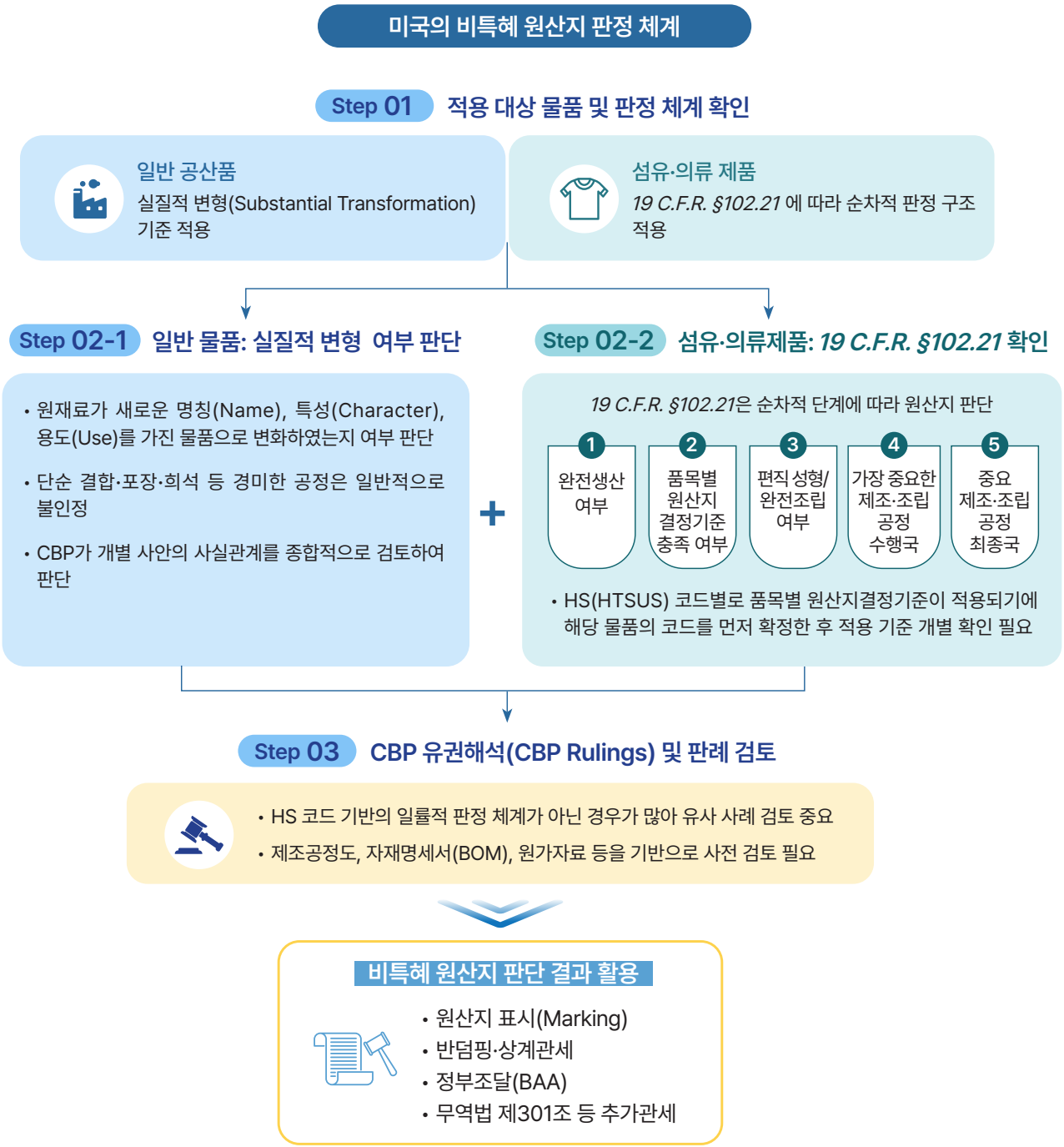
✔ 주요 관리 사항

- 포괄증명(Blanket Certification) : 동일 물품의 복수 선적에 증명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로 반복 적용 가능*(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제4항)*
- 특혜관세 사후 신청 기한 :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미 FTA 협정문 제6.19조제5항)*
-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제5항, 19 C.F.R. §10.1004(f))*
- 서류 보관 의무 : 특혜관세 신청일부터 5년간 보관*(19 C.F.R. §10.1007,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5조)*
- CBP 요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필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는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수입 물품에 적용되며, 주로 원산지 표시(Marking), 반덤핑·상계관세, 정부조달(Buy American Act, BAA), 무역법 제301조 조치 등의 통상정책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은 물품의 유형과 적용 제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대상 물품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원산지 판정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01 적용 대상 물품 및 판정 체계 확인

일반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Marking) 목적** 원산지는 *19 U.S.C. §1304* 및 *19 C.F.R. Part 134*에 근거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19 C.F.R. §134.1(b)*와 판례법상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USMCA 등 일부 협정과 섬유·의류 제품은 *19 C.F.R. Part 102*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섬유·의류 제품*(19 C.F.R. §102.21)*은 원산지국을 불문하고(이스라엘 제외) 순차적 판정 규칙이 공통 적용됩니다.

물품별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		판정 기준	근거 조항	비고
일반 물품	원산지표시 목적	물품의 명칭·성질·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	*19 C.F.R. Part 134, §134.1(b)* CBP 판례	한국산 일반 공산품 해당 (사안별로 CBP 심사)
일반 물품	협정 적용 품목*	세번변경기준(CTC)	*19 C.F.R. §102.1~102.20*	한국산 미해당
섬유·의류		순차적 판정기준**	*19 C.F.R. §102.21*	원산지국 불문(이스라엘 제외)

* USMCA·미-모로코 FTA·미-바레인 FTA 등

** 완전생산 → 세번변경·특정규칙→ 편직/조립 → 가장 중요한 공정 → 중요 공정 최종 수행국 순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표 「섬유·의류 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기준」 참고)

Step 02-1 일반 물품: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반 공산품의 비특혜 원산지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원재료가 **새로운 명칭(Name)·성질(Character)·용도(Use)**를 가진 물품으로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안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단순 결합·포장·희석 등 경미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변형의 판단 요소

실질적 변형의 판단요소		내용	관련 판례
명칭 (Name)	새 상업적 명칭 획득	조립 후 부품 명칭 유지 시 불인정되며, 새 명칭 획득 시 인정	*National Hand Tool Corp. (1992)*
성질 (Character)	본질적 물성 변화	단순 결합·조립만으로는 불인정되며, 가공, 화학 반응 등을 통한 물리적·화학적 변화 시 인정	*Uniroyal, Inc. (1982)*
용도 (Use)	새로운 용도 창출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용도(pre-determined)가 확정되어 있다면 불인정	*National Hand Tool Corp. (1992)*
공정 복잡성	기술집약적 공정	CNC 가공·열처리 등은 인정되나 볼트 체결·단순 조립 등은 불인정	*Energizer Battery, Inc. (2016)*
부가가치	보조적 고려 요소	부가가치 상승만으로 원산지 결정 불가 (공정의 질적 측면 우선)	*Energizer Battery, Inc. (2016)*

Step 02-2 섬유·의류 제품: *19 C.F.R. §102.21* 확인

섬유·의류 제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별도의 원산지 판정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관세법상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이 일반 물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체계*(19 U.S.C. §3592)*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9 C.F.R. §102.21*은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를 순차적 단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완전 생산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그럼에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편직 성형(Knit to shape), 완전조립 여부, 중요 제조·조립 공정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섬유·의류 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기준

적용 순위	세부 내용	해당 조항
1순위	**완전 생산** • 제품이 단일 국가, 영토 또는 속령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원산지는 해당국	*19 C.F.R. §102.21(c)(1)*
2순위	**세번 변경 및 특정 규칙** • 외국산 재료가 (e)항에 명시된 품목별 세번 변경 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는 그 단일국	*19 C.F.R. §102.21(c)(2)*
	특례(HS 제6213호, 제6214호 등 제품) 적용에 따른 원산지 판단 순서[1] ① 원단을 단일 국가에서 염색 및 날염하고 2가지 이상의 후가공(표백, 방축, 기모 등)을 거친 국가 → ② ①로 결정 불가 시, 원단 형성(Fabric-making)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 단, 형태에 맞춰 편직되었거나 2개 이상의 구성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6117.10호 물품은 제외 → ③ 제6117.10호의 경우 편직 성형(Knit to shape)된 국가 또는 미조립 구성품에서 제6117.10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한 완전 조립국	*19 C.F.R. §102.21(e)(2)*
3순위	**편직 또는 조립** (i) 편직 성형(Knit to shape): 제품이 편직된 단일 국가 (ii) 완전 조립: 편직 성형되지 않은 제품이 단일 국가에서 완전 조립된 경우 그 국가 (단, 제59류 직물, 제6213호, 제6214호, 제6301~6306호 등 본문에 명시된 예외 품목 제외)	*19 C.F.R. §102.21(c)(3)*
4순위	**가장 중요한 공정** • 가장 중요한 제조 공정 또는 조립이 수행된 단일 국가	*19 C.F.R. §102.21(c)(4)*
5순위	**중요 공정 수행 최종국** • 중요한 제조 공정 또는 조립이 수행된 마지막 국가	*19 C.F.R. §102.21(c)(5)*
기타 규정	**세트물품** • HTSUS상 세트로 분류되는 물품 중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를 경우, (c)항의 원칙에 따라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결정	*19 C.F.R. §102.21(d)*

또한, *19 C.F.R. §102.21*은 HS 코드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같은 섬유 제품이라도 품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9 C.F.R. §102.21(e)(2)의 특례는 제6213호·제6214호 및 제6117.10호, 제6302호·제6303호·제6304호 일부 소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단, 해당 호·소호 물품 중 면(cotton) 또는 양모(wool)로 된 것이거나 중량 기준 면 함유율이 16% 이상인 혼방섬유 물품은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 섬유·의류 제품(*19 C.F.R. §102.2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물품의 HTSUS 세번을 먼저 확정한 후 *19 C.F.R §102.21(e)* 별표에서 품목별 기준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유형	원산지 부여 기준	주요 적용 품목
방적공정기준 (Spinning process)	단섬유(staple fiber)를 방적사로 방적한 국가	HS 5106-5110, 5204-5207, 5508-5511 등
압출공정기준 (Extrusion process)	필라멘트를 압출(extrusion)한 국가	HS 5401-5406, 5501-5502 등
직물제조공정기준 (Fabric-making process)	원사·필라멘트에서 직물을 제조한 국가	HS 5007, 5208-5212, 5407-5408, 6001-6006 등
염색·인쇄+마감공정기준 (Dyeing&Printing+finishing)	직물을 염색·인쇄하고 표백·수축·기모 등 마감공정 2개 이상을 수행한 국가	HS 5309-5311, 5512-5516, 5602-5603 등
완전조립기준 (Wholly assembled)	2개 이상 부품을 단일국에서 완전 조립한 국가	HS 6101-6117, 6210-6211, 4202.12.40-4202.12.89 등
세번변경기준 (CTC)	특정 호·소호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	HS 3005.90 등
편직성형기준 (Knit to shape)	편직성형(knit to shape)부품을 단일국에서 편직한 국가	HS 6101-6117 등

Step 03 CBP 유권해석 및 판례 검토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는 HS 코드 기반의 일률적인 판정 체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 품목에 대한 CBP의 기존 유권해석(CBP Rulings)과 판례 검토가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판정하기 전에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사 판정 사례를 검토하여 원산지 판정 시 유의할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CBP CROSS(https://rulings.cbp.gov)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주요 판정 사례와 분석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간물	발간기관(연도)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ORIGIN CASE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2025~)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실무 가이드	관세청(2026)

※ 한국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 미국 법령 체계 및 집행 구조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국가 안보 관세
-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상계 관세
-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반덤핑관세
-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율 적용 구조 및 사례

[붙임] 1930년 관세법 제307조 –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붙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대응 관세

PART 2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미국 법령 체계 및 집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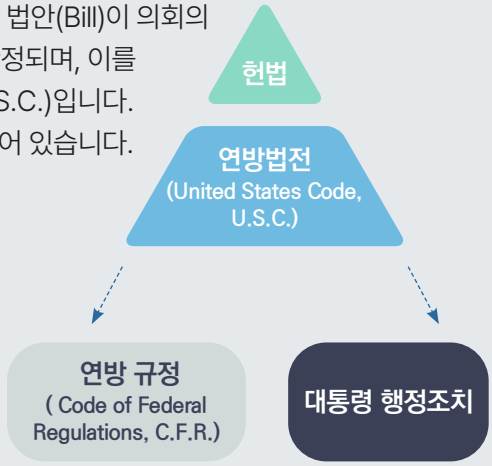
미국의 법제는 연방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며, 의회가 제정한 연방법을 편찬한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이하 U.S.C.)과 행정부가 제정·집행하는 규정을 편찬한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무역·관세 분야는 법률에서 행정부에 비교적 넓은 집행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세부 규정, 대통령 포고령, 연방관보 고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법률

법률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Bill)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공법(Public Law)으로 확정되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편찬한 것이 미국 연방법전(U.S.C.)입니다. 관세 및 무역 관련 주요 법률은 주로 제19편(Title 19)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② 규정 및 규칙

규정은 연방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법규로, 우리나라의 시행령·시행 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관보(Federal Register)에 규정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를 확정하며, 이렇게 제정된 현행 규정을 주제별로 체계화하여 수록한 것이 연방규정집(C.F.R.)입니다.



③ 대통령 입법 및 행정 조치

미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외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 분야에서는 특히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특정 관세 조치의 적용 대상, 세율, 시행 시기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행정 조치 종류

구분	내용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부 운영, 정책 집행 방향, 위원회 설치 등에 활용되며 관보에 게재되고 일련번호를 부여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관세율 변경, 수입제한 조치, 특정 법률상 권한의 시행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122조 등이 이 포고령을 통해 시행
대통령 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행정명령과 유사하게 행정부 내부 지시나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되며,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 효과 가능

미국의 주요 통상·관세 법령 및 조치

구분	법령·규정		주요 내용
법률	19 U.S.C. (United States Code)		미국 연방법을 주제별로 편찬한 법전으로 제19편(Title 19)은 관세 및 무역 관련 법률 포함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제304조 *(19 U.S.C. §1304)*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제307조 *(19 U.S.C. §1307)*	강제노동·교도소노동·계약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
		제338조 *(19 U.S.C. §1338)*	미국산 물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에 대한 보복관세 (상한 50%)
		제701조 *(19 U.S.C. §1671)*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에 상계관세 부과
		제731조 *(19 U.S.C. §1673)*	공정가치 이하로 판매되는 외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 *(19 U.S.C. §1862)*	국가 안보 위협 시 수입제한 조치
	무역법 (Trade Act of 1974)	제122조 *(19 U.S.C. §2132)*	국제수지 대응을 위한 한시적 수입 부가관세(surcharge) (최대 150일·최대 15%)
		제201조 *(19 U.S.C. §2251)*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구제조치 (세이프가드)
		제301조 *(19 U.S.C. §2411)*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및 보복조치
연방 규정	1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연방 행정규정을 주제별로 편찬한 규정집으로, 제19편(Title 19)은 관세·통관 및 무역 구제 관련 행정규정을 포함하며, 법률(19 U.S.C.)의 위임에 따라 CBP 등 행정기관이 집행을 위해 세부 규정을 제정
	Part 10 *(Subpart R)*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증명 및 검증 절차 규정
	Part 102		원산지 판정 규정 (USMCA 등 협정 물품에 세번변경기준 적용)
	Part 134		원산지 표시 의무 및 표시 방법 규정
	Part 177		CBP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 및 운영 절차 규정
행정 조치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Proclamation 11012		무역법 제122조 발동, 전 세계 10% 한시적 추가관세 (2026.2.24.~7.24.) *2026.5.7. 국제무역법원(CIT)이 무효 판결, 항소 진행 중
	Proclamation 11021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포고령,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세율 및 적용 범위를 개별 포고령으로 명시
유권 해석	CBP Ruling (CROSS)		연방법원 판결(선례주의) 및 CBP 공식 유권해석(Binding Ruling) - '실질적 변형' 등 법령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최종 근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품목분류(HS 기반 HTSUS)에 따른 기본 관세 외에도 특정 법령에 따른 추가 관세나 무역구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P 신고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FTA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통상법과 행정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 신고 시 검토해야 하는 우선순위 법령

품목별 국가 안보 관세 대상인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안보 위협' 품목 해당 여부	Step 1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강제노동 관세 대상인가? 무역법 제301조 관세 대상 품목 여부	Step 2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원산지·공급망 규제 대상인가? 중국 등 특정국 원자재 혼입 물품 해당 여부	Step 3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1930년 관세법 제307조
기업별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인가? 보조금 수혜(상계관세) 또는 덤핑 판매(반덤핑관세) 해당 여부	Step 4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각 관세 조치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되며,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가 중첩(Stacking)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국가 안보 관세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전 품목에 일률 적용되는 보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상무부의 품목별 안보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특정 품목군을 지정해 세율과 조치 범위를 차등 결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품목별 관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2026년 7월에는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제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232조 관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하여 적용 대상 품목과 과세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 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현황

1962년	냉전 상황에서 전략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내에 신설
1970~80년대	주로 석유 수입 제한을 위해 활용 (예시 :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의 근거로 활용)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현대 통상 분쟁의 핵심으로 부상
2025년	철강·알루미늄·구리 외에도 자동차·자동차 부품, 중·대형 차량, 목재 등 국가 안보 및 공급망 관련 품목으로 수입규제 대상 확대
2026년 ~	•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산업 품목으로 적용범위 확대 •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함량 기준 ⓒ 제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전환(2026.4.6.~)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신·증설 투자 계획 승인 기업 대상 제232조 관세 50% 감면 인센티브제 도입(2026.7.20.~)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19 U.S.C. §1862)*
조사 주체		상무부 장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
판단 기준		국내 생산 능력, 인적 자원, 원자재 가용성 그리고 외국의 경쟁이 국내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고려
조사 기간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대통령 결정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의견 동의 여부 및 조치 내용 결정(결정 후 15일 이내 시행)
조치 수단		관세 부과, 수입 할당, 수입 금지 또는 수출입 제한 협정 체결 등
의회 보고		대통령은 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의회로 서면 보고 필요
현황	주요 적용 품목	목재(HS 44류), 철강(HS 72·73류), 구리(HS 74류), 알루미늄(HS 76류), 반도체(HS 84·85류), 자동차·부품(HS 87류) 등
	한국산 세율 현황	• 50% : 철강·알루미늄·구리 본품 및 고비율 파생제품(Annex I-A) • 25% : 철강·알루미늄·구리 일부 파생제품 (Annex I-B) / 중대형 차량·부품 / 특정 첨단 반도체 및 파생제품 • 15% : 한국산 자동차 부품 /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및 농업 장비(Annex III, ~2027.12.31.) / 건설장비·이동식 산업기계(Annex I-C, ~2027.12.31.)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성분 • 10% : 연재(softwood) 원목·제재목 / 버스 • 면 제 : Annex II 해당 품목 /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 특정 의약품 • 인센티브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시설 투자 승인 기업 대상 관세 50% 감면 인센티브 신설 (2026.7.20.~)
	세율 구조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 + 제232조 품목별 추가 세율* * 제232조 해당 품목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세율 면제

⚠ 과세 방식 변경 요약(2026.4.6. 시행, 2026.6.8. 개정, 2026.7.20. 신규 포고령 반영)

기존	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metal content value)에 대해서만 제232조 관세 부과	제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에 제232조 일괄 부과(50% / 25% / 15%) - **함량가치 산정 의무 폐지**

- Annex II 품목은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추가관세 적용 제외
-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사용 제품에 대한 특례 기준 완화(미국산 함량 기준 95% → 85%)
- 산업기계·전력장비에 적용되던 15% 특례세율을 농업장비·일부 HVAC·이동식 산업장비까지 확대 적용 (~2027.12.31.)
- 러시아산 알루미늄 사용 제품 : 전체 과세가격 기준 200% 관세 계속 적용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생산 투자 인센티브(2026.7.20.): 미국 내 신·증설 투자 계획(Onshoring Plan)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신규 시설의 연간 예상 생산량만큼 일차 알루미늄 수입 시 제232조 관세 50% 감면 혜택 부여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1974년 무역법 제301조(19 U.S.C. §2411)는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업을 제한할 때, 미국의 통상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무역대표부(USTR)가 보복관세 부과·서비스 부문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2026년 3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와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치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미국 수입의 99.4%를 포괄하는 상위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국의 수입품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산 물품의 경우 '12.5% 상한'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 물품의 MFN 세율이 12.5% 미만이면 추가관세를 더해 최종 세율이 12.5%가 되도록 하고, MFN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관세 없이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 현황

1974년	외국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내 신설
1988년	•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으로 개정 • 조사 권한을 대통령에서 무역대표부로 이전 • 'Super 301(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통한 포괄적 부당무역관행 조사)' 'Special 301(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태 조사)' 조항 신설
1995년 ~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를 우선시하며 한동안 사용 자제
2018~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개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List 1~4A) 부과
2026년 ~	•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새로운 명분으로 제301조 조사 범위 대폭 확대 •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발표(2026.7.23.)및 한국산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관세 부과(2026.7.24.~)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19 U.S.C. §2411)*
조치 시행	의무적	미국의 협정상 권리가 침해되거나 외국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가 반드시 시행
	재량적	외국의 관행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일 때,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조치
조사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노동권 부인, 시장 접근 제한, 정부 보조금 등 광범위한 불공정 행위
조치 규모		미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액과 동등한 가치 내에서 보복 수준 결정
조치 수단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협정상 혜택 철회, 서비스 부문(금융, 통신 등) 영업 제한
적용 기간		기본 4년 *(19 U.S.C. §2417(c))* ※ 단, 종료 전 국내 이해관계자의 연장 요청이 있고 무역대표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연장 결정을 내리면 지속 가능

주요 적용 사례

대상국	발동 시기	추가 관세율	주요 대상 품목
중국	2018년 7월	25%	항공우주, 기계류, 전자부품 (818개 품목, List 1)
	2018년 8월	25%	화학품, 오토바이, 철도 장비 (279개 품목, List 2)
	2019년 5월	25%	전자제품, 식품, 목재 등 (5,745개 품목, List 3)
	2020년 2월	7.5%	의류, 신발, 소비재 등 (3,243개 품목, List 4A)
	발동 유예 중	추후 결정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약 300개 품목, List 4B)
16개 경제권 조사 (한국, 중국, EU, 일본 등)	미정	미정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능력 관련 조사
60개국 조사 (한국 포함)	2026년 7월	10% 또는 12.5%	강제노동 생산물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안 공식 판정 - 규제 도입국 10% - 법제 미비국 12.5% 차등 적용 ➡ **(한국)** 법제 미비국으로 분류되어 최대 12.5% 관세 부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세율 구조 - 대한국 적용 방식>

적용세율 (MFN 또는 협정세율)	무역법 제301조 적용 방식
12.5% 미만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제301조 관세 = 12.5%
12.5% 이상	추가 관세 미부과 (기존 적용세율 유지)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공공기관이 특정 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 해당 보조금 수혜액에 상당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701조*(19 U.S.C. §1671)*로, 1979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을 통해 신설된 조항입니다(구 제303조는 1995.1.1. 폐지).

2024년 대대적인 규칙 개정을 통해 초국경 보조금(제3국 지원) 조사가 허용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원가가 왜곡된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 판정 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상계관세 현황

1930년	1930년 관세법 제303조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수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원칙 수립
1979년	보조금(상무부)과 산업 피해(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을 분리하는 이분화된 조사 절차 도입
1994~95년	• '상계 가능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지 판단하는 특정성(Specificity) 판정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정비 • 구 제303조*(19 U.S.C. §1303)* 1995.1.1. 공식 폐지
2012년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이하 NME) 국가 제품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문화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이하 TFTEA)을 통해 조사 비협조 시 최고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권한을 부여하고 입증 의무를 완화
2024~25년	• 초국경 보조금 조사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수출국 정부뿐 아니라 제3국 정부가 해외 법인에 준 혜택도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확대 적용 • 반덤핑 조사 시 정부의 보조금 및 재정 지원에 따른 원가 왜곡 현상을 '특별시장상황(PMS)' 성립의 주요 판정 예시로 명문화 • 조사 비협조에 따른 불리한 가용 사실(AFA) 적용 시 법정 계층 구조에 따른 세율 산정 순서 명시*(19 C.F.R. §351.308(j))*

미국의 상계관세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01조*(19 U.S.C. §1671)*
조사 주체		미 상무부(보조금 및 상계여부 판정) + 미 국제무역위원회(산업 피해 판정)
부과 요건		외국 정부의 상계가능 보조금(재정적 기여·혜택·특정성) 확인 +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판정 시 부과
보조금 수혜액 산정		대출·보증은 시장 금리와의 차액, 재화 제공은 적정 보수 미달 등 시장에서 절감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조사 절차		**청원 접수/직권 개시** 1 **접수 후 20일 이내** 접수 후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2 **예비 판정**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정(조사 개시 후 25일, 접수 후 45일 이내) + 상무부 예비판정(조사 개시 후 65일 이내, 최대 130일 이내 연장 가능) 3 **최종 판정** 상무부: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또는 상무부 예비판정 후 120일 중 늦은 날 이내 4 **최종 조치**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 후 7일 이내 상계관세 명령 발령
조치 수단		[예비] 추정 관세액 선납(현금 예치) ⟩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 확정 징수
판단 수단	특별시장상황 (PMS)	주로 반덤핑조사에서 투입재 가격 왜곡을 이유로 기업의 장부 원가를 부인할 때 쓰이나, 상계 관세 조사에서 확인된 정부 보조금이 반덤핑 '특별시장상황' 판정의 핵심 증거로 연계되어 활용
	초국경 보조금	수출국 외부(제3국)에서 받은 혜택까지 조사 범위로 확장
	불리한 가용 사실 (AFA)	자료 미비나 비협조 시 상무부 보유 자료 중 가장 불리한 세율 적용
	비시장경제 (NME)	비시장경제국 조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혜택을 기업별로 조사 ※ 다만, 정부 개입으로 국내 가격이 왜곡되어 혜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국 내부 가격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제3국(대리국)의 시장 가격이나 외부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 산정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어 미국 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입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인 덤핑 마진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현황

1921년	1921년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21)* 제정을 통해 외국 수입품이 '공정 가액' 미만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현대 반덤핑 제도의 원칙 수립
1979년	• 1979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 개정을 통해 기존 '1921년 반덤핑법'의 핵심 원칙을 1930년 관세법 제731조*(19 U.S.C. §1673)*로 흡수·통합하여 현재의 미국 반덤핑 법적 체계 확립 • 덤핑 판정(상무부)과 산업 피해(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을 분리하는 이분화된 조사 절차 도입
1984년	1984년 무역 및 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 개정을 통해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매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임대차(Leasing)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
1994년	'외국 시장 가치'를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미국 가격'을 수출가격(Export Price)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산정 기준 확립
2016년	•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FTEA)을 통해 특별시장상황(PMS) 개념을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 확대 • 조사 비협조 시 최고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 사실(AFA) 권한을 부여하고 입증 의무를 완화
2024~25년	• 특별시장상황(PMS)과 관련하여 생산비 왜곡에 기여하는 다양한 판정 사례 예시로 유형 구체화 • 조사 대상 외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특별시장상황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참여 절차 정비 • 불리한 가용 사실(AFA) 적용 시 계층 구조를 확정하며 조사 비협조 시 적용할 세율 산정 순서 법제화

미국의 반덤핑관세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31조*(19 U.S.C. §1673)*
조사 주체		미 상무부(덤핑 판정) + 미 국제무역위원회(산업 피해 판정)
부과 요건		외국 물품이 미국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나 우려가 있을 경우 부과
조사 절차		**제소(신청)** ① **조사 개시 여부 결정**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② **예비 판정**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정(45일 이내) + 상무부 예비판정(14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190일 이내) ③ **덤핑 예비판정 시 잠정조치 부과** ④ **최종 판정** 상무부: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연장 시 135일 이내),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또는 상무부 예비판정 후 120일 중 늦은 날 이내 ⑤ **최종 조치**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모두 긍정 판정 시 최종 반덤핑관세 명령 발령
조치 수단		계산된 덤핑 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만큼 추가 관세 부과
판단 수단	특별시장상황 (PMS)	정부 개입 등으로 투입재 가격이나 원가가 비정상적일 경우, 기업의 실제 취득 원가를 부정하고 상무부가 대체 기준[시장가격, 구성 가치(constructed value) 등]을 활용하여 원가를 재산정
	불리한 가용 사실 (AFA)	자료 미비나 비협조 시 상무부 보유 자료 중 가장 불리한 세율 적용
	비시장경제 (NME)	비시장경제국의 개별 기업을 정부 통제 하의 단일 실체(Single Entity)로 추정하여 국가 단일 세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또한 실제 원가를 부인하고, 경제 수준이 유사한 제3국(대리국)의 가격 및 생산요소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산정
사후 관리	행정심사	관세 명령 발령 후, 매년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난 1년간의 실제 수출 거래를 바탕으로 덤핑 마진을 매년 재산정하는 사후 정산 절차
	일몰재심	관세 발령 후 5년마다 조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심사하는 절차. 조치 종료 시 덤핑·피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5년 연장

무역법 제301조 vs 무역구제(상계·반덤핑)

구분	1974년 무역법 제301조 (통상 정책 수단)	상계·반덤핑관세 (무역 구제 제도)
발동 주체	무역대표부 조사·집행 주도, 대통령 권한에 따라 조치 개별 기업 청원 없이 자체 개시 가능	상무부 + 국제무역위원회 이원 조사 체계 개별 기업·업계단체의 청원 필요
적용 목적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및 통상정책 목표 달성	덤핑·보조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 및 공정 경쟁 회복
적용 범위	특정 국가 전 품목 또는 특정 관행 관련 품목에 광범위	특정 국가·특정 기업·특정 품목에 한정
발동 속도	상대적 신속	느림 (기본 6~18개월 소요)
WTO 합치성	WTO 규정과 충돌 가능 (일방적 보복 조치로 분쟁 위험)	WTO 협정 내 허용 수단
세율 기준	정치·전략적 판단 (관세율 상한 없음)	산정된 덤핑마진·보조금율 전액
현황	• 대중국 List 1~4A 지속 중 • 강제노동 관련 조사 종결 ⊙ 한국산 최대 12.5% 관세 부과(2026.7.24.~) •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진행 중(2026.3.11.~)	철강·화학 등 다수 상계·반덤핑 명령 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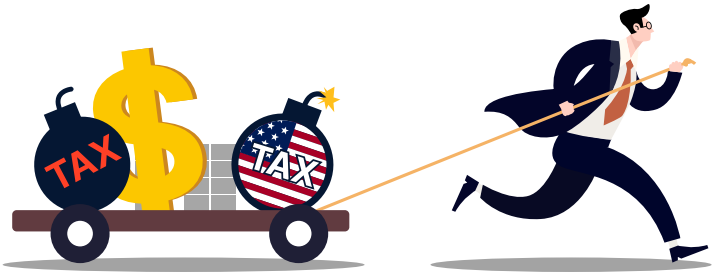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1930년 관세법 제338조(19 U.S.C. §1338)는 미국산 물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에 대응하는 조항입니다. 대통령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유사하지만,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 행위' 자체를 발동 요건으로 삼고, 추가 관세율 상한을 종가 50%로 명시한 점이 다릅니다.

1930년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실제로 사용된 전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5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며 관세법 제338조가 처음 발동되었습니다(2026.8.19. 발효). 더욱이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관세가 적용돼 기존 FTA 특혜관세 체계와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주의가 요구됩니다.

1930년 관세법 제338조 현황

1922년	1922년 관세법 제317조가 그 모태이며, 외국의 차별적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1930년	1930년 관세법 제338조로 재편되어, 외국의 차별 행위 시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940~90년대	GATT 체제 출범 이후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중시되면서 사문화
2026년 ~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대해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서명(2026.7.20.)으로 첫 시행(2026.8.19.~)



1930년 관세법 제338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19 U.S.C. §1338)*
발동 요건	① 외국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비용 부과 또는 사실상 미국 상거래 차별 행위 존재 ② ①에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조치 수단	• **추가 관세** : 기존 세율에 더해 최대 50%의 종가세 또는 그 상당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 **수입 금지** : 추가 관세 선포 이후에도 외국의 차별 행위가 지속·심화될 경우,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적용 기간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음 (차별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 가능)
차별 파악 및 권고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외국의 대미 차별 행위를 상시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차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및 조치 권고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이 조항에 따른 수입 금지 또는 관세 조치를 위반하여 불법 수입된 모든 물품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및 압류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율 적용 구조 및 사례 (2026년 8월 기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HS 분류에 따른 기본세율 외에, 아래의 추가 관세가 중첩(Stacking)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단일하게 결정되지 않으므로, 각 관세의 발동 요건과 면제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최종 실행 세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제122조 비교

구분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제232조	제301조	제122조(현재 종료)
연방법전	*19 U.S.C. §1862*	*19 U.S.C. §2411*	*19 U.S.C. §2132*
발동 명분	국가 안보 위협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	국제수지 불균형
세율 상한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최대 15%
적용 기간	무기한 (포고령 철회·개정 시까지)	별도 종료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	최대 150일
대상 범위	특정 품목	특정 국가·특정 품목	전 세계·전 품목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주관 기관	상무부 조사 후 대통령	무역대표부 조사 후 대통령	대통령
조사 소요	법정 상한 270일	법정 상한 6~18개월 (사안 유형별 상이)	조사 절차 없음
한국 적용	품목별 10~50% 부과 중	최대 12.5% 추가관세 부과 중 (2026.7.24.~)	전 품목 10% 추가관세 부과 종료 (2026.7.24.)

관세율 적용 구조

순서	기준	내용
①	HS 분류	HTSUS 세번 확정 ⓒ 기본 MFN 세율 결정
②	FTA 적용 여부	한-미 FTA PSR 충족 시 ⓒ MFN 세율을 특혜세율(0% 등)로 대체
③	무역확장법 제232조 해당 여부	제232조 적용 품목은 무역법 제301조 미해당
④	무역법 제301조 해당 여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적용세율(MFN 또는 협정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 적용 ※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관세 면제
⑤	상계·반덤핑관세 해당 여부	품목분류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계·반덤핑관세가 규정된 적용 범위에 해당 수입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필요

⚠ 한-미 FTA에 따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무역법 제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대상 품목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추가 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품목은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1930년 관세법 제307조 –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1930년 관세법 제307조*(19 U.S.C. §1307)*는 외국에서 강제노동·교도소 노동·형벌 제재 하의 계약노동(아동 강제노동 포함)으로 생산·제조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법령 제정 당시의 목적은 미국 내 자유노동을 외국의 강제노동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소비 수요 예외(국내 공급 부족 시 수입 허용) 조항이 폐지되고, 2021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이 제정되면서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통상 조치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제307조는 인도보류명령(Withholding Release Order, WRO)에 따른 억류, 반출, 압류로 수입 자체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 등 고위험 국가의 부품·원자재를 공급망에 포함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관세 없이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930년 관세법 제307조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현황

연도	주요 내용
1890년	맥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 Act of 1890)*을 통해 외국의 교도소 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최초로 법제화
1930년	• 1930년 관세법 제307조를 통해 금지 대상을 '강제노동(forced labor)·교도소 노동(convict labor)·형벌 제재 하의 계약노동(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으로 생산된 모든 물품으로 확대 • 단, '소비 수요 예외(consumptive demand exception)' 조항을 삽입하여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예외 허용
1980~90년대	중국산 교도소 노동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소비 수요 예외 조항으로 집행 범위 제한
2000~2015년	소비 수요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사실상 집행 공백 발생(2000년~2015년 동안 CBP의 인도보류명령 발동 건수 0건)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EA)으로 소비 수요 예외 조항 완전 삭제 ⓒ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 전면 금지
2021년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제정(2021.12.23.)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 물품 : 강제노동 사용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적용
2022년 ~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시작(2022.6.21.) • 고우선순위 집행 분야(High-priority sectors) 지정: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등
2025년 ~	• 고우선순위 집행 분야 추가 지정 : 가성소다(caustic soda), 구리, 리튬, 대추(jujubes), 철강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기업 목록(UFLPA Entity List)[2] 144개 기업으로 확대(2025년 8월 기준) • 미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데이터 기반 40개국 이상 공급망 조사 및 제3국 우회 수입 감시 강화

2) https://www.dhs.gov/uflpa-entity-list

1930년 관세법 제307조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07조*(19 U.S.C. §1307)*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적용 범위	강제노동, 교도소 노동, 형벌 제재 하의 계약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물품* * 2000년 개정으로 강제·계약 아동노동 포함 명확화
금지 요건	외국에서 상기 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 금지
집행 주체	국토안보부 주도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FLETF)가 전략을 수립하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기업 목록(UFLPA Entity List)을 관리하며, CBP가 통관 단계에서 집행
집행 수단	**인도보류명령** : 강제노동 제조 의혹에 대한 합리적이나 결정적이지 않은 정보(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information)만으로도 발동, 물품 유치 ↓ **수입자 소명 실패** ↓ (**확정 판정 없음**) 입항 거부 ⓒ 60일 내 미반출 시 폐기 (**확정 판정 있음**) 압류 및 몰수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물품 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기업 생산물품은 강제노동 사용으로 추정 ⓒ 수입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반증해야 통관 허용
수입자 의무	• 공급망 전체에 대한 합리적 주의의무(reasonable care) 이행 •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단계 공급망에 대한 강제노동 리스크 실사(Due Diligence) 필요 **(최소 함량 기준 없음 -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되어도 수입 금지)**
세율 구조	관세 부과가 아닌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비관세 조치

[붙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대응 관세

1974년 무역법 제122조(19 U.S.C. §2132)는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수입 부가금(Surcharge)을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2026년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제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한시적 수입 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제122조에 따른 조치는 법률상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어 해당 조치는 현재 종료(2026.7.24.)된 상태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10%의 수입 부가금(import surcharge)을 부과하였으나(닉슨 쇼크), 대통령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대두

▼

1974년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제수지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되, 수입 부가금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최대 150일로 제한

▼

1984년 지속되는 무역적자에 대한 제122조 적용 가능성 질의에 대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통상적·구조적 무역적자에 대한 법적 적용 불가 입장 표명, 제122조 미발동

▼

2026년
- 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무효화 판결
- 대통령 포고령 11012호를 통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수입 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정 적용기간(최대 150일) 만료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종료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19 U.S.C. §2132)
적용 범위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한시적 수입 조치 권한
발동 요건	①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②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방지가 필요할 시 ③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할 시
조치 수단	① 수입 부가금(Surcharge) : 과세가격의 최대 15%(ad valorem) 부과 ② 수입 할당(Quota) : 수량 제한 ③ 수입 부가금과 수입 할당 병행 가능
적용 기간	최초 150일, 의회 동의 시 연장 가능
수입 제한 조치의 예외	미국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어려운 물품, 필수 원자재 및 공급망 혼란 방지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예외 적용 가능
현황	2026년 대통령 포고령 제11012호에 따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수입 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정 적용기간(2026.2.24.~7.24.) 만료에 따라 종료

대미 수출 통관 실무 가이드

1.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 1-1 HS 코드 분류
 - 1-2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 1-3 원산지 표시
 - 1-4 FTA 원산지증명 - 한-미 FTA 활용
 - 1-5 서류 작성
 - 1-6 수출 신고

2. 입항 전 보안 신고
 - 2-1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 2-2 수입자 보안 신고
 - 2-3 관세 담보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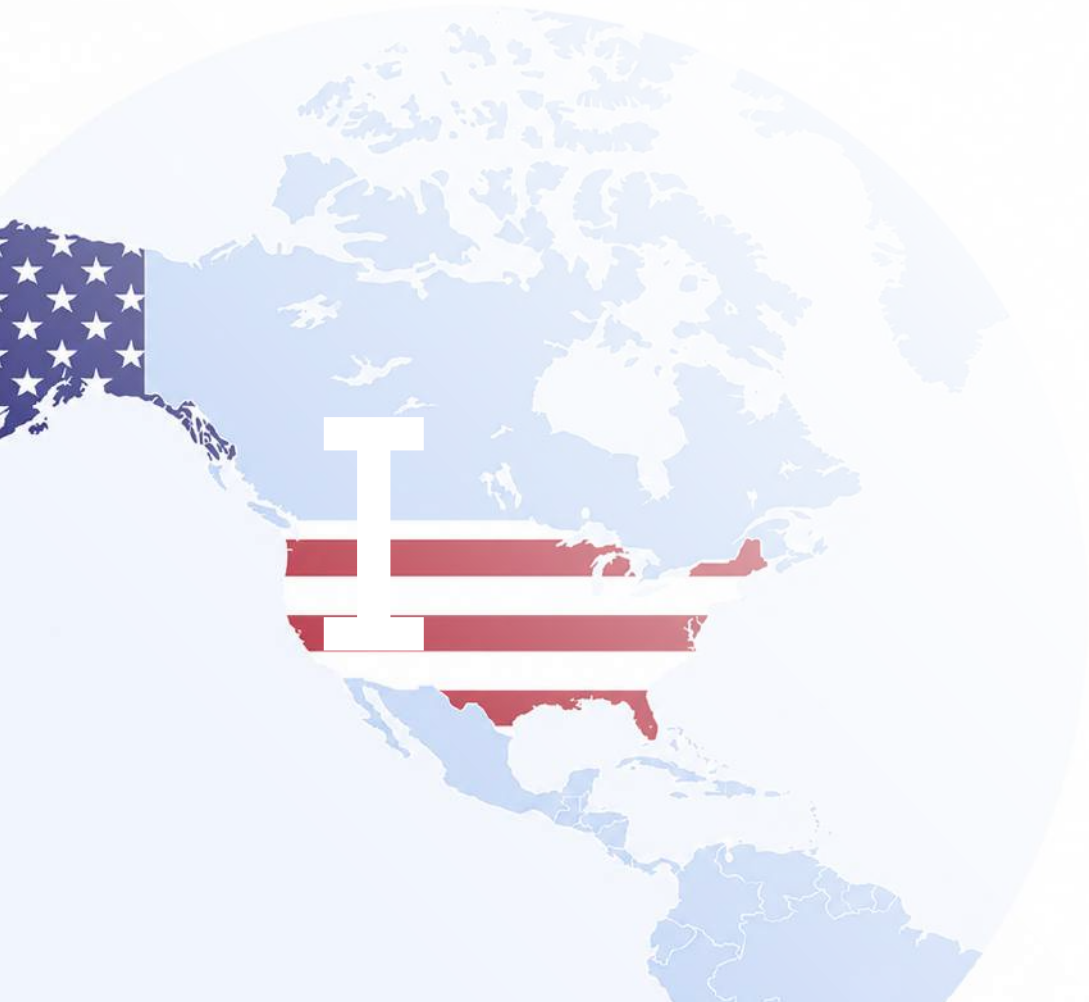
3. 물품 반입신고

4. 납세신고 및 정산
 - 4-1 납세 신고
 - 4-2 정산 및 최종 확정

5. 사후 관리

[붙임] 사후 검증
[부록] 대미 통관 단계별 주요 CBP 서식

PART 3



대미 수출 통관 실무 가이드

미국의 수입통관은 물품이 공항만에 도착하는 순간 종료되는 사실행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수출 준비 단계부터 미국 세관의 최종 정산(Liquidation)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진 법적 절차입니다.

미국은 수입자가 스스로 정확한 세율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발적 법규준수(Informed Complian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과 무역업계가 법적 의무를 분담한다는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CBP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할 의무를 지고,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 이하 IOR)은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3]'를 다해 성실히 신고해야 할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우리 수출자도 거래 조건(예: DDP 조건)이나 미국 내 지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미국 수입자의 역할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 시 거쳐야 할 실무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법적 의무를 설명합니다.

대미 수출 과정 5단계





3)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란 수입신고인이 세관의 물품 반출 여부 결정, 관세 부과, 정확한 통계 수집 및 기타 관련 법령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 가액, 품목 분류, 관세율 등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주의 의무를 의미한다(*19 U.S.C. §1484(a)(1)*).

Step 1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대미 수출 준비와 관련하여, 화물 선적 전 아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S 코드 확정과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수입자의 통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준비 항목

준비 항목		내용	핵심 체크포인트
사전검토	HS 코드 분류	미국 관세율표(HTSUS) 기준으로 정확한 HS 코드 확정	6단위는 국제 공통, 미국은 10단위 기준으로 최종 과세 적용 (CBP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능)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HS 코드를 기준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상계·반덤핑관세 등의 대상 여부 확인	HTSUS 추가 관세 코드(Chapter 99) 확인 필수
원산지관리	원산지 표시 (Marking)	수입물품 및 용기에 영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1930년 관세법 제304조(원산지 표시 의무)*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정산 전까지 세관 감독 하에 적법하게 표시·수출·폐기되지 않을 경우, 10% 추가관세(additional duties) 부과
	특혜 원산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신청)	생산자·수출자, 수입자 모두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비특혜 원산지	실질적 변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특혜 원산지 확인	단순 결합, 포장, 희석 등 경미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인정 불가
국내통관	서류 작성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준비	허위 신고 시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벌금 부과 가능
	수출신고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필증 수령	국내의 수출신고 정보와 미국 내 수입신고 정보 불일치 시 리스크 발생 가능 › 선적 전 신고 정보 재확인 필요

Step 1-1. HS 코드 분류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관리합니다. 한국의 HSK와 국제 공통기준인 6단위까지는 동일하지만, 7~10단위는 미국의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적용됩니다.

품목분류(Classification)는 단순히 관세율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와 같은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상계관세·반덤핑관세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에 앞서 수출 물품에 맞는 정확한 HTSUS 코드(이하 세번)를 분류하는 것이 수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HTSUS 세번 정보

항목	내용
HTSUS 구조	1~6단위: 국제 공통(WCO HS 기준) / 7~10단위: 미국 고유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2: 류 (Chapter) / 3·4: 호 (Heading) / 5·6: 소호 (Subheading) / 7·8: 미국 세율 (Tariff Line) / 9·10: 통계 부호 (Statistical Suffix)
HS Code 확정 절차	01 품목 특성 파악 (소재·기능·용도·가공도) 02 HS 통칙 및 부·류 주를 검토하여 USITC에서 잠정 세번 검색 (hts.usitc.gov) 03 CBP CROSS에서 유사 품목 선례 확인 (rulings.cbp.gov) 04 불확실한 경우 CBP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으로 공식 유권해석 확보
CBP 사전심사 (Binding Ruling)	• 수입자·수출자가 CBP에 특정 품목의 HS 코드·원산지·과세가격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사전 신청하는 제도 • 발급 후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CBP 법적 구속력 발생 •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회신(복잡 사안은 수개월 소요 가능)

Step 1-2.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물품의 HS 코드(세번)를 분류했다면, 해당 세번에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규제나 추가 관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부과되며, FTA 특혜관세와는 별도로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된 규제 외에도 세이프가드 등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타 수입규제를 추가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규제 유형	내용	주요 내용
상계관세	*19 U.S.C. §1671*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제품에 대해 보조 금액만큼 관세 부과
반덤핑관세	*19 U.S.C. §1673*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되어 미국 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19 U.S.C. §1862*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 부과
무역법 제122조	*19 U.S.C. §2132*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한 경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 150일간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 부과
무역법 제301조	*19 U.S.C. §2411*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산업이 피해받는 경우 추가 관세, 서비스 무역 제한 등 제재

Step 1-3. 원산지 표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물품은 관련 법령*(19 U.S.C. §1304)*에 따라,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BP는 수입자에게 일정 기간 내 표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과세가격(Final Appraised Value)의 10%에 해당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 또는 은폐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시 방법과 위치를 제품 설계 및 포장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1930년 관세법 제304조 *(19 U.S.C. §1304)**, *19 C.F.R. Part 134*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과 용기(포장)에 최종 구매자(Ultimate Purchaser)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표시 방법	① 각인(Die Stamping), ② 주조(Casting), ③ 라벨(Label), ④ 스티커(Sticker), ⑤ 태그(Tag) • 물품 특성에 따라 식별 가능성·내구성·영구성을 고려한 방식을 적용하며, 쉽게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라벨·스티커는 부적정 표시로 판단 가능
면제 대상	미가공 원료(crude substance), 수입 후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필연적으로 훼손되는 물품, 생산된 지 20년이 지난 물품, 수입자 인지 물품(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에 사용하여 법적 최종 구매자인 경우로서 거래 상황상 원산지를 필연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을 때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등 일부 예외 존재
위반 시 제재	• 원산지 미표시·오표시 적발 시 CBP에서 통지서(CBP Form 4647) 발부 및 물품 인도 보류 가능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BP 승인 및 감독하에 재작업을 통해 시정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 이행 • 기한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통관이 종결(Liquidation)되면 최종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추가관세(Marking Duty) 부과 • 추가관세 부과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이행 필요

Step 1-4. FTA 원산지증명 — 한-미 FTA 활용

앞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차례입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한-미 FTA는 정부 기관이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 서류를 작성하는 '자율 발급' 체계입니다. 사소한 오류나 근거 서류 미비도 미국 세관의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 FTA 특혜가 배제되고 관세가 소급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증명 관련 주요 내용

1 일반기준

항목	내용
기본원칙	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품·공구, 소매 포장·용기, 운송 포장·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제3국 보세 전시용품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구분		의미	적용 예시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Chapter, CC)	• HS 2단위(류) 세번이 변경될 것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류가 달라지면 원산지 인정	HS **72류**(철강) → HS **84류**(기계) ➔ **CC 충족**
	4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CTH)	• HS 4단위(호) 세번이 변경될 것 • CC보다 세분화된 기준	HS **3901**(폴리에틸렌) → HS **3926** (플라스틱 제품) ➔ **CTH 충족**
	6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Sub-Heading, CTSH)	• HS 6단위(소호) 세번이 변경될 것 • CTH보다 세분화된 기준	HS **291521**(초산) → HS **291524** (무수 초산) ➔ **CTSH 충족**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		• 세번변경 대신 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 • 일정 비율(통상 35~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포함할 것 (Regional Value Contents, RVC) • 일정 비율 이하의 역외 부가가치를 포함할 것 (iMport Contents, MC)	**한-미 FTA 상 자동차 관련 상품의 부가가치기준** : 집적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사용 가능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특정 제조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할 것 • 섬유·의류·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	**섬유** : 원사(Yarn Forward) 또는 원단(Fabric Forward) 기준으로 역내 생산 요구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보관

항목	내용
자율발급 방식	• 한-미 FTA는 정부기관 발급이 아닌 수출자·생산자·수입자의 자율발급 • 별도 서식 없이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 문구 기재 또는 별도 원산지증명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시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 코드 및 품명, ⑥ 원산지증명 정보, ⑦ 증명일,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포괄증명 유의 사항	포괄증명의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한 반복 선적에 한해 증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증명서 반복 사용 가능* ※ 단,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제5항)*
서류 보관 의무	• 수출자·생산자 모두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 의무, 수입자 자율발급 시 수입자 또한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의무*(한-미 FTA 협정문 제6.17조)* • CBP 사후검증(Verification)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
사후검증 리스크	• CBP가 수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서(CBP Form 28) 발부 ➔ 불충분 시 특혜 배제 예고(Form 29) ➔ 최종 특혜 배제 시 소급 추징+이자 • 한국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 검증 가능*(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

Step 1-5. 서류 작성

HS 코드 분류, 수입규제 확인, 원산지 표시, FTA 활용 여부 검토까지 마쳤다면, 이제 그 결과를 선적 서류에 반영할 단계입니다. 미국 통관에 사용되는 모든 신고 정보는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서류상 내용이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단순한 대금 청구서가 아니라 CBP가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아래 필수 기재 항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송장 필수 기재 항목

필수 기재 항목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송하인/매도인 (Shipper/Seller)	•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 대미 상업송장의 경우 우측 상단에 MID Code를 기재
수하인 (Consignee)	• 물품을 인수하는 수하인 정보 기재 • 신용장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For account & risk of Messrs"로 표시 가능
출발일자 (Departure date)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발 예정일 기재 • 통상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상의 선적일자와 일치 필수
출발지 (From)	• 출발 예정 항구, 공항명 기재 •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와 일치 필수
도착지 (To)	• 최종 목적지 항구, 공항명 기재 •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 필수
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Invoice No. and date)	판매자가 부여한 송장 참조번호와 송장 발행일 기재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자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와 발행일 기재
매수인 (Buyer <if other than consignee>)	•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 정보 다시 기재
인도조건 및 결제조건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인도조건과 지급조건 기재 • FOB, CIF 등 Incoterms 기준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사용통화도 명확히 기재
물품명세 (Goods description)	• 규격, 품질, 등급 등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명세 기재 •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일치 필수
수량 (Quantity)	• 송장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 기재 • 개수, 세트, 상자, 중량, 용적, 길이, 면적 등 거래에 맞는 단위 • 사용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시
단가 (Unit Price)	단위 수량당 가격 기재(예 : US$ 3.50/kg)
총액 (Amount)	•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금액 기재 •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하고, 할인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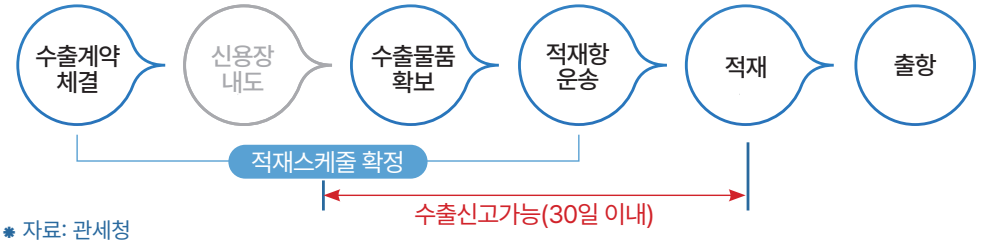
* 자료: 한국무역협회 상업송장 기재요령 참고 재구성

Step 1-6. 수출신고

선적 서류 작성까지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단순히 물품을 내보내는 사실행위가 아니며, 관세 환급이나 FTA 혜택의 사후 근거가 되는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의 경우, 한국 관세청에 신고된 정보와 CBP에 신고되는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두 정보가 다를 경우, 향후 원산지 검증 시 추가 소명 요청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주요 내용

수출신고 방법	세부 내용
신고인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대행
신고처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KTNET uTradeHub
주요 필요 서류	수출신고서, 수출요건확인서(해당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 절차	

* 자료: 관세청

Step 2 입항 전 보안 신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화물의 사전 정보 제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운송수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정보를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운송사와 수입자가 각각 이행해야 할 신고 의무, 그리고 통관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담보 채권을 설명합니다.

Step 2-1.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 이하 AMS)은 운송업자가 화물 적하목록 정보를 미국 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체계로, 현재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기반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선사·항공사 등 운송업자이며, 수입자나 수출자가 직접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은 수출자가 제공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에 기반하므로 수출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물이 외국항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에는 선적 금지 명령(Do Not Load, DNL)이 발부되어 해당 화물의 선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화물기 도착 최소 4시간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항공화물 사전 보안검색 체계인 ACAS(Air Cargo Advance Screening)가 적용되며, ACAS 데이터는 출발지에서 항공기 적재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항목	해상	항공
적용 제도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AMS)	항공화물 사전 심사제도(ACAS) +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AMS) 병행
제출 주체	선박회사(Carrier) 또는 무선박운송인(NVOCC)*	항공사(Carrier) 또는 포워더(Freight Forwarder)
제출 기한	선적 24시간 전(AMS 24-hour Rule) ※ 단, 벌크 및 인가된 브레이크 벌크 화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가능	• **항공화물 사전 심사제도** : 항공기 적재 전 •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 화물기 도착 4시간 전 (북미 인근·카리브해 등 근거리 지역 출발 항공편은 출발 시점까지)
미준수 리스크	Do Not Load(DNL) 등 적재 제한 조치	
주요 제출 정보	품명(Description), 송하인(Shipper)·수하인(Consignee) 정보, 운송 관련 정보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 화물 식별정보(컨테이너 번호 또는 항공운송장 번호), 수량·중량 등	
수출자의 역할	상업송장·포장명세서의 품명·수량·중량이 AMS/ACAS 신고 정보의 기초자료가 되기에 기재 오류 발견 시 포워더 또는 운송업자에게 수정 요청하여 선적지연이나 선적 제한 방지	

* 무선박운송인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 선박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항하지 않지만, 화주와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여 실제 선사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해상운송주선인

Step 2-2. 수입자 보안 신고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이하 ISF)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 화물에 대해 수입자가 화물 적재 전 미국 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보안 절차입니다. 흔히 'ISF 10+2'라고 불리며, 수입자가 제출해야 할 10가지 항목과 운송인이 제출해야 할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벌크 화물은 ISF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항공 화물에는 ISF 대신 항공 화물 사전 보안검색 시스템인 ACAS가 적용됩니다.

ISF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원칙적으로 화물 적재 24시간 전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항 전'이나 '선박 출항 전'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규정상 기준은 '적재 24시간 전'입니다. 다만 수입자가 제출하는 10개의 항목 중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혼재업자 정보, 2개 항목은 예외적으로 미국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미국 항구까지의 항해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외국 항구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이 두 항목 역시 적재 시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항해 일수에 따라 실제 준비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예약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F 규정을 위반(미제출, 지연 제출, 허위 신고 등)할 경우, 위반 항목당 $5,000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ISF 1건당 최대 $10,000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화물 검사(Hold) 지정에 따른 항만 체선료(Demurrage) 등 연쇄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예약과 동시에 'ISF 10+2' 항목을 수입자 및 포워더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ISF 제출 시에는 수입자 식별번호가 필수적이며, 신규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 신원 등록 신청서(CBP Form 5106)를 ACE 포털에 먼저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후 ISF를 진행해야 합니다.

ISF 관련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colspan="2">적용 대상</td><td>해상 화물 전용 (벌크 화물은 ISF 제출 의무 면제)
※ 항공 화물은 ISF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ACAS(Air Cargo Advance Screening) 프로그램 적용에 유의</td></tr>
<tr><td colspan="2">제출 기한</td><td>• 해외 항구에서 적재 24시간 전 (19 C.F.R. §149.2)
• 단, 제출 항목 중 ⑨ 컨테이너 적입 장소, ⑩ 혼재업자 정보의 경우 미국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 가능</td></tr>
<tr><td colspan="2">수입자 식별 번호</td><td>ISF 제출 시 수입자 식별 번호 필수 기재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td><td>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사업자)이 사용하는 연방 국세청(IRS) 발행 세무 번호</td></tr>
<tr><td>SSN
(Social Security Number)</td><td>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수입자가 될 경우 사용하는 사회보장번호</td></tr>
<tr><td>CAIN
(CBP Assigned Importer Number)</td><td>미국 내에 사업장이나 SSN이 없는 외국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를 위해 미국 세관이 특별히 부여하는 식별 번호
※ 신규 수입자는 CBP Form 5106(수입자 신원 생성/변경 신청서)을 ACE 포털에 먼저 제출하여 등록 완료 후 ISF 진행</td></tr>
</table></td></tr>
<tr><td rowspan="2">제출 항목</td><td>수입자</td><td>① 판매자 정보, ② 구매자 정보, ③ 수입자 식별번호, ④ 수하인 번호, ⑤ 제조자/공급자 정보, ⑥ 물품 수령인 정보, ⑦ 원산지, ⑧ HS 코드(6단위 이상), ⑨ 컨테이너 적입 장소, ⑩ 혼재업자 정보</td></tr>
<tr><td>운송인</td><td>⑪ 선박 적재계획, ⑫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td></tr>
<tr><td colspan="2">제재 및 리스크</td><td>ISF 규정 위반 시 위반 항목당 $5,000의 손해배상액 부과(19 C.F.R. §113.62)
(주요 위반 사유: 미제출, 지연 제출, 허위/부정확한 제출 등)</td></tr>
</table>

Step 2-3. 관세 담보 채권

관세 담보 채권(Customs Bond)은 수입자가 관세·내국세·수수료 납부 및 미국 관세법령상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수입자와 보증회사(Surety),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간의 3자 법적 계약입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정식 수입신고(Formal Entry) 시 수입자는 반드시 적정한 채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채권은 일회성 채권(Single Transaction Bond, STB)과 연간 포괄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됩니다. 일회성 채권은 특정 수입 건에만 유효하며, 연간 포괄 채권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나 이상의 수입 거래에 적용되고, 별도의 해지 절차가 없는 한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건별로 채권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 유형은 연간 수입 횟수와 예상 관세 납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간 포괄 채권은 최근 12개월간 납부한 관세·세금·수수료의 10%(최소 5만 달러)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므로, 예상 수입 규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량이 증가하여 납부 관세액이 기존 채권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CBP는 해당 채권에 대한 신규 수입신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도 증액 절차를 거쳐 신규 수입신고 승인 거절 및 통관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세 담보 채권의 종류

구분	일회성 담보 채권 (Single Transaction Bond, STB)	연간 포괄 담보 채권 (Continuous Bond)
적용 범위	특정 단건의 수입 신고(Entry)에만 유효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하나 이상의 수입 거래에 유효
담보 금액	총 신고가격 + 추정 관세·세금·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	① 또는 ② 중 큰 금액* ① 최소 $50,000 ② 최근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 합계의 10% (1만 달러 단위 올림)
비고	건별로 채권을 체결해야 하므로 반복 수입 시 행정 부담 발생 가능	정기 수입 시 건별로 채권을 반복 체결할 필요가 없어 행정 부담 감소
채권 선택 시 고려 사항	1 연간 수입 횟수 파악 → 2 과세가격 합계 추정 → 3 예상 관세 납부액 계산 → 4 Single vs Continuous 비용 비교 → 5 보증보험사 선정	

* $10,000 단위로 설정되며, 반덤핑·상계관세(AD/CVD) 대상 품목의 경우 CBP가 일회성 담보 채권 형태의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회사와 별도 협의 필요

Step 3 물품 반입신고

물품 반입신고(Entry)는 화물의 도착 사실을 CBP에 알리는 절차가 아니며, 운송인이 AMS를 통해 사전 제출한 적하 목록으로 도착이 확인된 물품을 CBP의 통제로부터 반출하기 위해 수입자 또는 통관 대행인이 신청하고 승인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미국 수입자(Importer of Record, 이하 IOR) 또는 통관 대행인(Customs Broker)은 화물이 양륙[4]한 날로부터 15일(역일 기준) 이내에 자동화 통관 환경(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이하 ACE) 포털 또는 자동화 통관 인터페이스(Automated Broker Interface, 이하 ABI)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반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물은 세관이 지정한 보세 창고(General Order Warehouse)로 강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추가 보관료와 운반비가 발생하며,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면 해당 물품은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양륙(Landed) :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화물을 하역하여 지상으로 이동시킨 상태를 의미하며, 미국 통관 시 수입 신고 기한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반입신고 절차

1 반입신고 준비



준비사항

- 수입자 식별번호(Tax ID) 확인
- 유효한 담보 채권 연결 확인

⚠ 유의사항

관세 담보 채권(CBP Bond)이 없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시스템에서 신고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에 선적 전 미리 확인 필요

2 신고서 전송



제출 서류

- 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FTA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서류

⚠ 유의사항

- 물품 도착 전 사전신고 가능
- 해상 화물은 도착 5일 전부터 ACE 시스템상 반출승인 처리 가능

3 세관 심사 및 검사



진행 내용

- ACE 시스템의 자동 스크리닝
-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또는 물리적 검사(ATS 위험 선별 검사*)

⚠ 유의사항

ISF 데이터와 실제 선적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세관 검사(Examination) 대상 지정 가능성 존재

* **ATS 위험 선별 검사 :** CBP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가 위험 지수 기반으로 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 선별
(**분석 대상** : 수입자의 이력, 수출자 정보, 원산지, 품목의 민감도, 운송 경로 등)

4 반출 승인 확보



- 세관 반출 승인 통지 수령
- 운송사로부터 D/O(Delivery Order) 수령

⚠ 유의사항

- 반출 승인은 조건부이며 CBP는 통상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섬유류는 180일 이내) CBP Form 4647(재반입/표시정정 통지)을 통해 재반입 요구 가능 ⓒ 불이행 시 물품가액 (the value of the merchandise) 상당의 손해 배상액 부과 가능(제한·금지 품목은 3배)
- 정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반입 요구 불가
- 반출 승인 후 화물을 픽업하지 않으면 부두 보관료 발생

5 물품 인도



터미널 화물 픽업 및 수입자 창고 배송

⚠ 유의사항

화물 양륙 후 15일(역일 기준) 이내에 반입 신고 및 세관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세 창고(General Order Warehouse)로 강제 이전되어 비용 발생

Step 4 납세신고 및 정산

물품 반출 승인 이후 통관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는 별도로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해야 하며, 이후 CBP의 심사를 거쳐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을 두고 정산(Liquidation)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CBP의 최종 정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관세 추징 등 사후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Step 4-1. 납세 신고

수입자는 반입신고 시점(Time of Entry)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세액과 수입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핵심 서류인 CBP Form 7501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10일 이내' 제출 기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으며, 관세 납부 자체를 월 단위로 유예·통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납세신고 제출 기한 및 납부 방식 관련 예외 사항

구분	예외 사항	내용	관련 규정
제출 기한	동시 제출	반입신고와 납세신고 함께 제출 가능 ⓒ 하나의 서류가 반입신고와 납세신고 역할을 겸하며, 물품 도착 전 사전심사 요청도 가능	*19 C.F.R. §142.12(a)*
	통합 신고	수하인이 동일한 신고 건 중 같은 원산지·수출국으로부터 동일 선박/항공사로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 신고 간격이 1주일 이내인 건은 하나의 납세신고로 통합 제출 가능 ⓒ 납세신고 기한은 최초 반입신고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 단 각 반입신고 건은 신고서상 개별 식별되어야 하며, 쿼터·수입금지 품목 등은 통합 불가	*19 C.F.R. §142.17*
	미조립·분해 물품	크기·성질상 단일 운송수단으로 선적할 수 없어 미조립·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단일 물품(예: 대형 설비·기계류)은 여러 차례 분할 도착하더라도 하나의 신고로 처리 가능 ※ 단 완제품의 마지막 분할분 도착 전까지 납세신고가 금지되나 신고 기한(최초 분할분 반출일로부터 10 영업일)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물류 지연 주의	*19 C.F.R. §141.58(g)*
납부 방식	월별 정산 (PM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자는 건별 납부 대신 월 단위로 관세를 통합 정산·납부하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 PMS) 방식 선택 가능 ※ 국가통관자동화프로그램(NCAP)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	*90 FR 48314* (2025.10.16.)

납세신고의 세액은 법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아니며, 법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정산(Liquidation) 시점입니다. 납세신고는 수입자가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바탕으로 관세·내국세 등을 스스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자발적 준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앞서 반입신고 시 제출한 데이터와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CBP의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핵심 사항</th></tr>
<tr><td>신고기한</td><td>반입신고 시점(Time of Entry)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완료</td></tr>
<tr><td>제출서류</td><td>CBP Form 7501</td></tr>
<tr><td>주요 내용</td><td>HTSUS 코드 재확인, 물품 가액 확정, 적용 세율 계산, 통관 수수료 산출</td></tr>
<tr><td>관세 납부</td><td>납세신고와 동시 또는 일정 주기에 따라 관세 납부</td></tr>
<tr><td>주의사항</td><td>• 반입신고 때 제출했던 데이터와 납세신고의 확정 데이터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CBP 소명 요구 발생 가능
• 정산(Liquidation) 확정 전 오류 발견 시 사후신고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이하 PSC)으로 수정 가능
<table><tr><td>PSC
제출 가능 요건</td><td>① 납세신고가 승인(accepted) 상태일 것, ② CBP 검토(review) 중이 아닐 것,
③ CBP 관리 하에 있을 것, ④ 관세·세금·수수료 완납 상태일 것, ⑤ 정산(liquidation) 완료 전일 것*
* 정산 완료 후에는 PSC 불가 — Prior Disclosure 또는 Protest만 가능</td></tr><tr><td>PSC
제출 가능 시기</td><td>① 또는 ②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제출 가능
① 반입 신고일(entry date)로부터 300일 이내
② 예정 정산일(liquidation date) 15일 전</td></tr></table></td></tr>
</table>



CBP Form 7501의 주요 기재 사항 및 양식

구분	항목명	실무 확인 포인트
식별 정보	1. Entry Number (수입신고 번호)	신고인 코드(3자리) + 일련번호(7자리) +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 고유 식별번호
	2. Entry Type (통관 유형)	수입 유형별 코드(예: 01-일반 소비용, 03-반덤핑/상계관세 대상 소비용, 21-보세창고 반입 등) ⓘ 적용되는 통관 절차 결정
	13. Manufacturer ID (MID)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식별하는 코드(국가코드+이름+주소 기반 생성)
	29. Ultimate Consignee (최종 수하인)	최종 물품 인수자(수입자와 다른 경우 구분 필요)
	30. Importer of Record (수입자)	관세 납부 및 수입 관련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과세 정보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제조·생산국(단 2개국 이상에서 생산·가공된 경우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33A. HTSUS Number (품목분류)	미국 10단위 품목분류번호
	36A. Entered Value (신고 가액)	*19 U.S.C. §1401a*에 따른 신고 가액(USD 기준)
	36B. Charges (운임·보험 등)	수출국에서 미국 최초 입항항까지 발생한 운임·보험 및 기타 운송비용
추가 핵심	21~24. 철강·알루미늄 생산 공정 정보	철강의 용해·주조 국가와 알루미늄의 제련·주조 국가 기재
	31 Line 구분	품목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번호(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다르면 별도 라인 작성)
	31 SPI (특혜 프로그램 코드)	FTA 등 특혜관세 적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코드
	33B. AD/CVD Case Number (반덤핑/상계 번호)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시 필수 기재

Step 4-2. 정산 및 최종 확정

납세신고 데이터가 제출된 이후, CBP가 해당 납세신고 건의 관세·내국세 등을 최종 계산하여 확정하는 행정 처분을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합니다.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CBP는 수입자가 신고한 HTSUS 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오류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되면 정보요청서(CBP Form 28)를 발송해 소명을 요구하며, 심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면 조치통지서(CBP Form 29)를 통해 세금 추가징수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됩니다.

납세신고와 정산

구분	납세신고(Entry Summary)	세관 정산 (Liquidation)
법적 근거	*19 U.S.C.§1484, 19 C.F.R. §§141,142*	*19 U.S.C.§1504, 19 C.F.R.§159*
당사자	수입자	CBP
성격	관세 신고 및 자발적 세액 납부 의무	세액의 최종 법적 확정 및 행정적 종결
핵심 서류	CBP Form 7501	없음 (전자 공고)
기한	반입신고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반입신고일(date of entry)로부터 1년
수정 가능성	PSC(Post Summary Correction) 등으로 수정 가능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단 90일 이내 CBP 직권 재정산 또는 180일 이내 공식 이의신청 제기 가능)
주의사항	반덤핑/상계관세 등 추가 관세 누락 주의	정산 결과 확인 및 불복 시 정산 통지일 또는 재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식 이의신청 기한 엄수

세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반입신고일(또는 보세창고 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신고 상태대로 자동 정산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이 품목분류·과세가격 확정을 위해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산 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Extension)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정산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신고 상태대로 자동 정산됩니다. 상계·반덤핑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정부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유예(Suspension)될 수 있으며 이 경우 4년 상한과는 무관하게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산의 핵심 개념

구분	핵심 사항
정산 전 심사	• 납세신고 후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세관은 수입자가 신고한 HTSUS 코드, 과세 가격, 원산지 등에 오류가 없는지 심사 • 심사 중 의문점이 생기면 정보요청서(CBP Form 28)를 발송하며, 오류가 확인되면 조치통지서(CBP Form 29)를 통해 세금 추가 징수 등 행정조치 진행
법정 처리 기한	세관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반입신고일(date of entry)로부터 1년(법정기한) 이내에 자동 정산 처리 ※ 정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자의 위반 사항(과실·중대 과실은 위반 행위 발생일, 사기는 위반 사실 발견일 기준)이 적발되거나 FTA 사후 검증이 개시되는 경우, 법정 시효에 따라 각각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관세 추징 가능
연장 및 보류	• **연장(Extension)** : 세관의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산 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여 통관일로부터 4년 경과 시 자동 정산) • **유예(Suspension)** : 상계·반덤핑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 명령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 유예 가능

정산 결과는 크게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원안 확정과, 세관의 심사나 오류 발견으로 세액을 재계산하는 세액 변동 정산으로 나뉩니다. 최종 정산 시 최초 예치액과 세관 산정액의 차액이 $20 미만일 경우 세관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키며, $20 이상일 때만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다만 정산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라도 세관의 자체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합니다. 이 90일이 지나면 세관의 단순 과실로 인한 추징 리스크는 소멸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 따른 CBP 조치 및 수입자 대응 포인트

정산 유형	CBP 조치	수입자 대응 포인트
원안 확정 (As Entered)	수입자가 신고한 HTSUS 코드, 과세 가격, 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확정	대응 불필요(ACE 포털에서 상태 확인)
세액 변동 (Change in Liquidation)	심사 결과 오류가 발견되어 세액을 재계산, 추가 관세(추징) 또는 초과 납부액 환급 발생	정보요청서(CBP Form 28) 수령 시 30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필수, 이후 세액 변동이 확정되어 조치통지서(CBP Form 29)가 발급되면 기한 내 추가 관세 납부
이의신청 (Protest)	세관의 불리한 정산 처분(품목 분류 변경, 과세가격 상향 등)에 대해 수입자가 불복	정산 통지일 또는 재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세관에 공식 이의신청서 제출 *(19 U.S.C. §1514)*



⚠ ACE 포털 활용

- ✔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포털은 CBP의 통합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미국의 수입자와 수출자, 관세사 등 무역 관계자가 계정을 생성·관리하고 통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 ACE 포털에서는 수입신고 현황을 조회하고, 납세 신고(Entry Summary), 사후 수정(Post Summary Correction), 이의신청(Protest)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정산(Liquidation)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수입자의 ACE 계정은 CBP와의 주요 업무 창구 역할을 수행하므로, 한국 수출자는 미국 수입자 및 관세사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E 포털 주요 기능 및 서식

주요 기능	내용
서식 조회	Entry 번호 기준 CBP 서식 조회 및 확인
서식 수신	CBP Form 28(정보요청서), 29(조치통지서) 등 주요 CBP 서식 수신
서식 회신	ACE를 통해 회신 제출
첨부 제출	증빙자료 업로드를 통한 자료 제출 (파일 형식 : PDF, JPG, PNG, XLS 등)
진행 관리	미회신(Pending) / 기한초과(Overdue) 상태 모니터링 및 기한 관리

주요 서식	의미	대응 핵심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제출
CBP Form 29	조치통지서	과세·원산지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쟁점 대응
CBP Form 4647	원산지 표시/재반입 요구	표시 보완·물품 재반입 조치
CBP Form 6051D	유치(Detention) 통지서	추가 자료 및 설명 제출
Documents Required	추가 서류 요청	요청자료 신속 제출

*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5), ACE Forms: Receive and Respond to CBP Forms

➔ 기한 초과(Overdue) 경고가 표시되기 전, 즉 미회신(Pending)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품목은 EAPA 조사 과정에서 정산(Liquidation)이 보류되고 추가 담보 또는 현금예치금(Cash Deposit) 납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보증 한도(Bond Capacity)와 자금 운용 계획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5 사후 관리

미국 수입 통관 제도는 수입자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율준수(Informed Compliance)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CBP는 통관 이후에도 신고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검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반입신고와 관련된 기록은 반입신고일로부터 5년, 그 외 기록은 해당 기록을 생성하게 한 활동일로부터 5년입니다*(19 C.F.R.§163.4)*.

사후관리는 통관 이후 기업이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관세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CBP의 정보제공요청서나 조치통지서 등 각종 통지에 기한 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CBP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관세 추징 및 행정제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후 관리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h>위반 시 리스크</th><th>법적 근거</th></tr>
<tr><td>법정 서류 보관</td><td>반입신고일로부터 최소 5년간 관련 모든 증빙 서류 보관 의무

※ 단 CBP가 정산을 연장(Extension of Liquidation)하여 세액 확정이 지연되거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 조사 등이 개시된 경우 해당 법적 절차가 최종 종결 및 확정될 때까지 관련 서류 보관 필요</td><td>사후검증 서류 제출 지연/불응 시, FTA 특혜 즉시 배제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수입 건당 아래의 추가 벌금 부과 가능

과실 (Negligence): 수입 건당 최대 $10,000 또는 물품 과세가격 (Appraised Value)의 40% 중 적은 금액 부과

고의적 불이행 (Willful Failure): 수입 건당 최대 $100,000 또는 물품 과세가격 (Appraised Value)의 75% 중 적은 금액 부과</td><td>•19 U.S.C. §1508
•19 U.S.C. §1509
•19 C.F.R. Part 163</td></tr>
<tr><td>자발적 사전 신고 (Prior Disclosure)</td><td>• 세관의 공식 조사가 개시되기 전 또는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오류를 세관에 알리고 부족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구제 제도
• 유효한 사전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납 관세·세금·수수료를 신고 시점 또는 CBP의 미납 금액 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 필요</td><td>오류 방치 중 세관 적발 시, 사기 / 중대 과실 여부에 따라 추가 벌금 부과</td><td>•19 U.S.C. §1592
•19 C.F.R. §162.74</td></tr>
<tr><td>공급망 이력 관리</td><td>원자재 출처부터 제조 공정까지 투명한 공급망(Supply Chain) 추적 데이터 확보</td><td>경쟁사 제보(e-Allegations) 등으로 기습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공급망 입증 실패 시 반덤핑/상계관세 소급 추징 및 물품 억류/수입 전면 금지 조치</td><td>•19 U.S.C. §1517
•19 U.S.C. §1307
•19 C.F.R. Part 165</td></tr>
</table>

[붙임] 사후 검증

사후 검증은 CBP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특혜관세 적용,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여부 등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됩니다.
수입자는 신고 내용의 적법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되거나 관세 추징,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후 검증은 통상 정보제공요청(CBP Form 28) 발송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이후 세관의 검토와 통지를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실무자가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 검증 관련 주요 내용

<table>
<tr><th>유형</th><th>서식/근거</th><th>행위자</th><th>내용</th><th>주요 유의사항</th></tr>
<tr><td>자료 요청</td><td>CBP Form 28</td><td>CBP(요청) 수입자(회신)</td><td>CBP가 수입자에게 원산지·품목분류·가격 관련 자료 제출 요청</td><td>• 30일 이내 서면 회신 필수
• 기한 연장 필요시 담당 CBP 직원에게 사전 연락 필수
• 미회신 시 CBP 단독 결정 후 CBP Form 29 발행
※ CBP Form 28은 CBP Form 29 발행의 전제 요건이 아니며, CBP는 Form 28 없이 29 직접 발행 가능</td></tr>
<tr><td>처분 통지</td><td>CBP Form 29</td><td>CBP(통지) 수입자(대응)</td><td>CBP가 자료 불충분·오류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추징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예고</td><td>• 예비결정 : 20일 이내 추가 소명자료 제출 가능
• 최종결정 : 정산 후 180일 이내 CBP Form 19(Protest) 제기만 가능</td></tr>
<tr><td>조사</td><td>19 U.S.C. §1592</td><td>CBP (조사·제재) 수입자 (피조사)</td><td>일반 과실 및 페널티 조사 시

CBP가 수입자의 신고부실·과실에 대해 민사과징금 부과절차 개시</td><td>• CBP가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
<table>
<tr><th>구분</th><th>관세 영향</th><th>관세 미영향</th></tr>
<tr><td>사기 (Fraud)</td><td colspan="2">국내 시장 가액 이하</td></tr>
<tr><td>과실 (Negligence)</td><td>국내 시장 가액 또는 미납 세액의 2배 중 적은 금액</td><td>과세가격의 20% 이하</td></tr>
<tr><td>중과실 (Gross Negligence)</td><td>국내 시장 가액 또는 미납 세액의 4배 중 적은 금액</td><td>과세가격의 40% 이하</td></tr>
</table>
• 자발적 사전 신고 시 벌금 경감 가능
<table>
<tr><th>구분</th><th>관세 영향</th><th>관세 미영향</th></tr>
<tr><td>사기</td><td>미납 세액 100%</td><td>과세가격의 10%</td></tr>
<tr><td>과실/중과실</td><td>미납 세액에 대한 법정 이자</td><td>면제</td></tr>
</table>
• CBP의 과징금 부과 통지 후, 수입자는 경감·면제 신청 가능(19 U.S.C. §1618)</td></tr>
</table>

유형	서식/근거	행위자	내용	주요 유의사항
조사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	CBP(검증) 수출자·생산자(응대)	**FTA 특혜원산지 조사 시** CBP가 수입신고된 특혜원산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섬유·의류 품목에 한해 상대국 관세당국 경유) 실시	사업장 방문·서면질의 모두 수출자·생산자가 CBP에 직접 응대 가능
	19 U.S.C. §1517	CBP(조사) 신고인·수입자·수출자/생산자(이해관계자)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EAPA) 해당 시** 이해관계자의 신고(Allegation) 또는 연방기관의 통보(Referral)에 따라 CBP가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여부 조사	• 신고 또는 통보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판단 •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잠정 조치(Interim Measures) 여부 판단 • 조사 개시 후 300일 이내 최종 결정(복잡 사건의 경우 최대 360일) • 최종 판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결과 통지 • 비협조 시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적용 가능 • 회피 인정 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및 추가 제재 가능
과세 처분 확정	19 U.S.C. §1504	CBP	**정산 시** CBP가 관세율, 과세가격, 수량 및 관세액을 최종 확정	•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 및 이자 부과 가능 • 사후검증 결과 부족 징수된 관세는 정산 또는 재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 • 정산 또는 세관의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제기(Protest) 가능(19 U.S.C. §1514)
이의 제기 신청	CBP Form 19	수입자(신청) CBP(심사)	수입자가 CBP의 정산·처분에 불복하여 공식 이의신청	•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율 등 모든 세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기한 내 이의제기 미제기 시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 • 이의제기 기각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가능



부록

CBP Form 5106 수입자 신원 등록·변경 신청서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CONTROL NUMBER 1651-0064
EXPIRATION DATE: 06/30/2027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19 CFR 24.5

As the importer, consignee, or other party listed in block 1, you are responsible for the valid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Any Customs Broker or third party who is submitting the information on your behalf is only obligated to convey this information to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YPE OF ACTION (Mark all applicable): ☐ Notification of Identification Number ☐ Change of Name ☐ Change of Address

All the data elements with a red asterisk are required

1. NAME AND IDENTIFICATION NUMBER

*1A. Importer/Business/Private Party Name:

*1B.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ocial Security Number (SSN), or CBP-Assigned Number:

Number Type: *(Select Only One)*

☐ IR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 Social Security Number (SSN)
☐ CBP-Assigned Number
☐ Requesting a CBP-Assigned Number

1C. ☐ DIV ☐ AKA ☐ DBA | 1D. DIV/AKA/DBA Name:

1E. ☐ I wish to be assigned a CBP Number. Check here if requesting a CBP-assigned number and indicate reason(s).

If you marked yes to receive a CBP assigned number, indicate the reasons why. Check all that apply.

☐ I have a SSN, but wish to use a CBP-Assigned Number on all my entry documents ☐ I have no Social Security Number ☐ I have no IRS Number ☐ I have not applied for an IRS number or SSN ☐ I am not a U.S. Resident

1F. CBP-Assigned Number:

1G. Type of Company:

☐ Corporation ☐ Partnership ☐ LLC ☐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 U.S. Government ☐ State/Local Government ☐ Foreign Government

1H. If you are an importer, how many entries do you plan on filing in a year? Select from the following:

☐ 1-4 per year ☐ 5-24 per year ☐ 25 or more per year
☐ infrequent personal shipments **or** ☐ I do not intend to import.

1I. How will the identification number be utilized? Select all options that will apply:

☐ Importer of Record ☐ Consignee/Ultimate Consignee ☐ Drawback Claimant
☐ Refunds/Bills **or** ☐ Other _____

1J. Program Code 1:	1K. Program Code 2:	1L. Program Code 3:	1M. Program Code 4:

2. ADDRESS INFORMATION

2A. MAILING ADDRESS *(Each street address line can be no more than 32 characters)*

*Street Address 1:	*City:	*State/Province:
Street Address 2:	Zip Code:	Country ISO Code:

*Is the address in 2A, a:

☐ Residence ☐ Corporate Office ☐ Warehouse ☐ Retail Location ☐ Office Building
☐ Business Service Center ☐ Post Office Box **or** ☐ Other - Explain: _____

2B. PHYSICAL LOCATION ADDRESS *(Required only if different than mailing address. Each street address line can be no more than 32 characters)*

*Street Address 1:	*City:	*State/Province:
Street Address 2:	Zip Code:	Country ISO Code:

*Is the address in 2B, a:

☐ Residence ☐ Corporate Office ☐ Warehouse ☐ Retail Location ☐ Office Building **or**
☐ Other - Explain: _____

CBP Form 5106 수입자 신원 등록·변경 신청서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2C. Phone number:	Extension:	2D. Fax number:
*2E. Email address:		2F. Website:

3. COMPANY INFORMATION

3A. Provide a brief business description: _____

3B. Provide the 6-digit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code for this business: _____

3C. Provide the D-U-N-S Number for the Importer: _____

3D. If you are also a broker/self-filer, supply the filer code that will be used when conducting business with CBP: _____

3E. Year established: _____

3F. List the nam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ocial Security Number (SSN), or CBP-assigned numbers for current or previous related business entities.

Related Business	Name of Business Entities	IRS/SSN/CBP Assigned Number
☐ Current ☐ Previous		
☐ Current ☐ Previous		
☐ Current ☐ Previous		

3G. Primary Banking Institution: _____ (Name)

_____ (Bank Routing Number)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Country ISO Code)

3H. Certificate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 (Locater I.D.) _____

3I. Certificate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 (Reference Number) _____

3J. **Business Structure/Beneficial Owner/Company Officers** - The officers listed in this section must have importing and financial business knowledge of the company listed in section 1 of this form and must have legal authority to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company listed in section 1.

Entry 1	**Company Position Titl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Direct Phone Number:	Extension:	Direct Email:	
	Social Security Number:	Passport Number:	Country of Issuance:	Passport Expiration Date:
	Passport Type: ☐ Regular ☐ Official ☐ Diplomatic ☐ Passport Card			
Entry 2	**Company Position Titl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Direct Phone Number:	Extension:	Direct Email:	
	Social Security Number:	Passport Number:	Country of Issuance:	Passport Expiration Date:
	Passport Type: ☐ Regular ☐ Official ☐ Diplomatic ☐ Passport Card			
Entry 3	**Company Position Titl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Direct Phone Number:	Extension:	Direct Email:	
	Social Security Number:	Passport Number:	Country of Issuance:	Passport Expiration Date:
	Passport Type: ☐ Regular ☐ Official ☐ Diplomatic ☐ Passport Card			

CBP Form 5106 수입자 신원 등록·변경 신청서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3J. Business Structure/Beneficial Owner/Company Officers (Continued)

Entry 4

Company Position Titl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Direct Phone Number:	Extension:	Direct Email:	
Social Security Number:	Passport Number:	Country of Issuance:	Passport Expiration Date:
Passport Type: ☐ Regular ☐ Official ☐ Diplomatic ☐ Passport Card			

4. CERTIFICATION

By my signature below, I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of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document is true, correct, and provided in good faith. I understand that if I make an intentional false statement, or commit deception or fraud in this 5106 document, I may be fined or imprisoned (18 U.S.C. § 1001).

*Printed or Typed Full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Signature:	
*Title:			
Telephone Number:	*Date:	Broker Name:	Telephone Number:

PRIVACY ACT STATEMENT

Pursuant to 5 U.S.C. § 552a(e)(3), this Privacy Act Statement serves to inform you of why DHS is requesting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AUTHORITY: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s authoriz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pursuant to Title 1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CFR §24.5 Filing Identification Number and 149.3 Data Elements). CBP has the authority to collect Social Security numbers (SSN) under Executive Order (E.O.) 9397, as amended by E.O. 13478 (Pursuant to 31 U.S.C. §7701(c), 26 U.S.C. §6109(d), 19 C.F.R. §24.5 and §149.3).

PURPOSE:
CBP is requesting this information to collect and maintain records on all commercial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carrier, broker, importer, and other ACE-ITDS Portal user account and manifest information. CBP will use this information to track, control, and process all commercial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This facilitates the flow of legitimate shipments, and assis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DHS)/CBP in targeting illicit goods.

ROUTINE USES: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may be shared externally, as a "routine use" with appropriate federal, state, local, tribal, or foreign governmental agencies, or multilater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assist DHS in investigating or prosecuting the violations of, or for enforcing or implementing, a statute, rule, regulation, order, license, or treaty or when DHS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would assist in the enforcement of civil or criminal laws. A complete list of the routine uses can be found in the system of records notice associated with this form, "DHS/CBP-001 Import Information System." The Department's full list of system of records notices can be found on the Department's website at http://www.dhs.gov/system-records-notices-sorns.

CONSEQUENCES OF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Providing this information to is voluntary. However, failure to provide the information will result in the denial of a CBP-assigned importer number/importer of record identification (ID) number, and inability to pay import related duties, taxes, and fees related to an entry of imported goods. Individuals who do not provide this information may be required to use a separate party for transactions, which may affect or delay the importation of shipments in international trade.

부록

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Entry/Immediate Deliver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CONTROL NUMBER: 1651-0024
EXPIRATION DATE: 11/30/2025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49.3

HEADER INFORMATION

1. PORT OF ENTRY:	2. BOND TYPE: ☐ Single Transaction Bond ☐ Continuous Bond ☐ No Bond Required	3. IMPORTER NUMBER: ☐ IRS ☐ SSN ☐ CBP Assigned

4. IMPORTER NAME AND ADDRESS: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5. ENTRY NUMBER:	6. BOND VALUE:	7. ENTRY VALUE:	8. CES:

9. ENTRY TYPE:	10. ORIGINATING WHSE ENTRY NUMBER *(For Entry Type 22 Only)*:	11. SURETY CODE:

12. PORT OF UNLADING:	13. MODE OF TRANSPORTATION: ☐ Air ☐ Ocean ☐ Other ☐ Pipeline ☐ Rail ☐ Hand Carry ☐ Truck	14. LOCATION OF GOODS *(FIRMS)*:
15. G.O. NUMBER:	16. CONVEYANCE NAME/FTZ ZONE ID:	

HEADER REFERENCE INFORMATION

17. REFERENCE ID CODE:	18. REFERENCE ID NUMBER *(max of 50 characters)*: 19. Self Certification: ☐ Yes ☐ No

HEADER PARTIES *(MUST APPLY TO ENTIRE ENTRY; IF NOT, SKIP TO LINE INFORMATION)*

20. HEADER PARTY TYPE:	21. HEADER PARTY TYP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AND ADDRESS:	22. HEADER ID # *(if applicable)*: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 IRS ☐ SSN ☐ CBP Assigned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 IRS ☐ SSN ☐ CBP Assigned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 IRS ☐ SSN ☐ CBP Assigned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 IRS ☐ SSN ☐ CBP Assigned

CERTIFICATION

I hereby make application for entry/immediate delivery.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bond is sufficient, valid, and current, and that all requirements of 19 CFR Part 142 have been met.

23. SIGNATURE OF APPLICANT:

24. PHONE NUMBER:	25. DATE:

26. BROKER OR OTHER GOVT. AGENCY USE

CBP USE ONLY

27.
☐ CBP examination required.
☐ Other agency action required, namely:

☐ Entry rejected, because:

DELIVERY AUTHORIZED:	SIGNATURE:
	DATE:

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Entry/Immediate Delivery)

LINE INFORMATION

A

28. LINE 1 HTS CODE: #1 #2 — 28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 28B. Country of Harvest: — 28C. Vessel Flag:

28D. Vessel Name: — 28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28F. Method of Harvest:

29.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Description: ☐ HTS ☐ Commercial/Invoice — 30. LINE ITEM QUANTITY: — 31. FTZ FILING DATE:

32. VALUE: #1 #2 — 33. COUNTRY OF ORIGIN: — 34. ZONE STATUS: ☐ P ☐ N

35. LINE PARTY TYPE: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36. LIN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AND ADDRESS: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37.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 IRS ☐ SSN ☐ CBP Assigned

B

28. LINE 1 HTS CODE: #1 #2 — 28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 28B. Country of Harvest: — 28C. Vessel Flag:

28D. Vessel Name: — 28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28F. Method of Harvest:

29.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Description: ☐ HTS ☐ Commercial/Invoice — 30. LINE ITEM QUANTITY: — 31. FTZ FILING DATE:

32. VALUE: #1 #2 — 33. COUNTRY OF ORIGIN: — 34. ZONE STATUS: ☐ P ☐ N

35. LINE PARTY TYPE: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36. LIN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AND ADDRESS: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37.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 IRS ☐ SSN ☐ CBP Assigned

C

28. LINE 1 HTS CODE: #1 #2 — 28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 28B. Country of Harvest: — 28C. Vessel Flag:

28D. Vessel Name: — 28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28F. Method of Harvest:

29.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Description: ☐ HTS ☐ Commercial/Invoice — 30. LINE ITEM QUANTITY: — 31. FTZ FILING DATE:

32. VALUE: #1 #2 — 33. COUNTRY OF ORIGIN: — 34. ZONE STATUS: ☐ P ☐ N

35. LINE PARTY TYPE: ☐ Manufacturer ☐ Consignee ☐ Buying Party ☐ Selling Party

36. LINE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AND ADDRESS: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37.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 IRS ☐ SSN ☐ CBP Assigned

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Entry/Immediate Delivery)

BILL OF LADING INFORMATION				
38. ☐ Non-AMS	39 ☐ Split Bill	40. BOL TYPE: ☐ In-Bond ☐ Master ☐ House ☐ Regular/Simple		41. SCAC/CARRIER ID:
42. IN-BOND NUMBER:		43. BOL NUMBER:	44. QUANTITY:	45. UNIT OF MEASURE:
SECOND BILL OF LADING		40. BOL TYPE: ☐ In-Bond ☐ Master ☐ House ☐ Regular/Simple		41. SCAC/CARRIER ID:
42. IN-BOND NUMBER:		43. BOL NUMBER:	44. QUANTITY:	45. UNIT OF MEASURE:
46. VOYAGE/FLT/TRIP:		47. CONVEYANCE:		48. ARRIVAL DATE:
BILL OF LADING INFORMATION *(Use additional block below for a second Bill of Lading)*				
38. ☐ Non-AMS	39. ☐ Split Bill	40. BOL TYPE: ☐ In-Bond ☐ Master ☐ House ☐ Regular/Simple		41. SCAC/CARRIER ID:
42. IN-BOND NUMBER:		43. BOL NUMBER:	44. QUANTITY:	45. UNIT OF MEASURE:
SECOND BILL OF LADING		40. BOL TYPE: ☐ In-Bond ☐ Master ☐ House ☐ Regular/Simple		41. SCAC/CARRIER ID:
42. IN-BOND NUMBER:		43. BOL NUMBER:	44. QUANTITY:	45. UNIT OF MEASURE:
46. VOYAGE/FLT/TRIP:		47. CONVEYANCE:		48. ARRIVAL DATE:

부록

CBP Form 7501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SUMMARY

OMB CONTROL NUMBER 1651-0022
EXPIRATION DATE 02/28/2026

1. Filer Code/Entry Number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umber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umber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umber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Country of Melt and Pour			22. Primary Country of Smelt			
23. Secondary Country of Smelt			24. Country of Cast			
25. Location of Goods/G.O. Number	26. Consignee Number		27. Importer Number		28. Reference Number	
29. Ultimate Consignee Name (Last, First, M.I.) and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30. Importer of Record Name (Last, First, M.I.) and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31. Line No.	32. Description of Merchandise	33. A. HTSUS No. B. AD/CVD No.	34. A. Gross Weight B. Manifest Qty.	35. Net Quantity in HTSUS Units	36.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7. A. HTSUS Rate B. AD/CVD Rate C. IRC Rate D. Visa Number	38.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Other Fee Summary (for Block 43)	39. Total Entered Value $	CBP USE ONLY	TOTALS
	Total Other Fees $	A. LIQ Code / REASON CODE	B. Ascertained Duty / 41. Duty
			C. Ascertained Tax / 42. Tax
			D. Ascertained Other / 43. Other
			E. Ascertained Total / 44. Total

40.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I declare that I am the ☐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45. Declarant Name (Last, First, M.I.)	Title	Signature	Date

46.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Last, First, M.I.) and Phone Number	47. Broker/Importer File Number

CBP Form 7501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ENTRY SUMMARY CONTINUATION SHEET

1. Filer Code/Entry Number							
31. Line No.	32. Description of Merchandise 33. A. HTSUSNo. B. AD/CVD No.	34. A. Gross Weight B. Manifest Qty.	35. Net Quantity in HTSUS Units	36.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7. A. HTSUS Rate B. AD/CVD Rate C. IRC Rate D. Visa Number	38.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CBP Form 7501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LINE INFORMATION

A

31. LINE 1 HTS CODE:
#1
#2
31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31B. Country of Harvest: ☐ Disclaimed
31C. Vessel Flag:
31D. Vessel Name:
31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31F. Method of Harvest:

B

31. LINE 2 HTS CODE:
#1
#2
31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31B. Country of Harvest: ☐ Disclaimed
31C. Vessel Flag:
31D. Vessel Name:
31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31F. Method of Harvest:

C

31. LINE 3 HTS CODE:
#1
#2
31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31B. Country of Harvest: ☐ Disclaimed
31C. Vessel Flag:
31D. Vessel Name:
31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31F. Method of Harvest:

D

31. LINE 4 HTS CODE:
#1
#2
31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31B. Country of Harvest: ☐ Disclaimed
31C. Vessel Flag:
31D. Vessel Name:
31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31F. Method of Harvest:

E

31. LINE 5 HTS CODE:
#1
#2
31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31B. Country of Harvest: ☐ Disclaimed
31C. Vessel Flag:
31D. Vessel Name:
31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31F. Method of Harvest:

F

31. LINE 6 HTS CODE:
#1
#2
31A. Country of Mining: ☐ Disclaimed
31B. Country of Harvest: ☐ Disclaimed
31C. Vessel Flag:
31D. Vessel Name:
31E. Vessel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umber:
31F. Method of Harvest:

부록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OMB CONTROL NUMBER: 1651-0023
EXPIRATION DATE: 8/31/2025

Date of Request |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Manufacturer/Seller/Shipper	Carrier	Entry No.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Invoice No.	HTSUS Item No.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CBP Broker Company Name	Broker Filer Code/Number

TO:
Name: Last Name / First Name / M.I.
Street 1:
Street 2:
City: State: Zip Code:

FROM:
Street 1:
Street 2:
City: State: Zip Code: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Port |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 (1) packing ☐ (2) commissions ☐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4) assists ☐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from container mark(s)and number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 E. See item below.

CBP Officer Message

Reply Message (If more space is needed, see continuation on page 2.)

CERTIFICATION —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 Last Name / First Name / M.I.

Signature | Telephone No. | Date

CBP Official	Team Designation	Telephone No.
Fax No.	Email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Reply Message (Continuation)

PRIVACY ACT STATEMENT

Pursuant to 5 U.S.C. § 552a (e)(3), this Privacy Act Statement serves to inform you of why DHS is requesting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AUTHO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s authoriz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pursuant to 19 CFR 151.11.

PURPOSE:
CBP is responsible for appraising imported merchandise by ascertaining its value, classifying the merchandise under the tariff schedule, and assessing a rate and amount of duty to be paid. If CBP requires samples or additional information, CBP will send a written request, or its electronic equivalent, to the importer or their agent when the invoice or other documentation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CBP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ROUTINE USES: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may be shared externally as a "routine use"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if the information relates to those agencies, or to assis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processing commercial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lete list of routine uses associated with this form can be found in the system of records not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CBP-001 - Import Information System." The Department's full list of system of records notices can be found on the Department's website at http://www.dhs.gov/system-records-notices-sorns.

CONSEQUENCES OF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Providing this information is voluntary. However, failure to provide this information may result in CBP not hav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processing certain merchandise.

부록

CBP Form 19 이의신청서 (Protes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CONTROL NUMBER: 1651-0017
EXPIRATION DATE: 4/30/2027

PROTEST

Pursuant to Sections 514 & 514(a), Tariff Act of 1930 as mended, 19 CFR Part 174 et. seq.

PROTEST NUMBER *(Supplied by CBP)*

DATE RECEIVED *(CBP Use Only)*

NOTE: If your protest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and you wish to CONTEST the denial, you may do so by bringing a civil action i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mailing of Notice of Denial. You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stitution of an action by writing the Clerk of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e Federal Plaza, New York NY 10007 (212-264-2800).

SECTION I - IMPORTER AND ENTRY IDENTIFICATION

PORT

IMPORTER NUMBER

IS ACCELERATED DISPOSITION BEING REQUESTED? *(19 CFR 174.22)*
○ Yes ○ No

ENTRY DETAILS

PORT CODE	FILER CODE	ENTRY NUMBER	CHECK DIGIT	DATE OF ENTRY	DATE OF LIQUIDATION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OR OTHER PROTESTING PARTY
Name *(Last, First, MI)*:
Street Address Line 1:
Street Address Line 2:
City: State: Zip Code:

SECTION II - DETAILED REASONS FOR PROTEST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ET FORTH SEPARATELY, (1) EACH DECISION PROTESTED, (2), THE CLAIM OF THE PROTESTING PARTY, AND (3) THE FACTUAL MATERIAL AND LEGAL ARGUMENTS WHICH ARE BELIEVED TO SUPPORT THE PROTEST. ALL SUCH MATERIAL AND ARGUMENTS SHOULD BE SPECIFIC. GENERAL STATEMENTS OF CONCLUSIONS ARE NOT SUFFICIENT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SECTION III - REQUEST FO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CTION ON PREVIOUSLY FILED PROTEST

Protesting party may request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ion taken on a previously filed protest that is the subject of a pending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and is alleged to involve the same merchandise and the same issues. (See 19 CFR 174.13(a)(7).) To request such disposition, enter the protest number and date of receipt of such previously filed protest. ▶

PROTEST NO. OF PREVIOUSLY-FILED PROTEST

DATE OF RECEIPT

SECTION IV - SIGNATURE AND MAILING INSTRUCTIONS

NAME AND ADDRESS OF PERSON TO WHOM ANY NOTICE OF APPROVAL OR DENIAL SHOULD BE SENT
Name *(Last, First, MI)*:
Street Address Line 1:
Street Address Line 2:
City: State: Zip Code:

NAME, ADDRESS, AND CBP IDENTIFICATION NUMBER TO WHICH REFUND SHOULD BE SENT
Name *(Last, First, MI)*:
Street Address Line 1:
Street Address Line 2:
City: State: Zip Code:
CBP Identification Number:

IF FILING AS ATTORNEY OR AGENT, ENTER YOUR NAME, ADDRESS, AND IMPORTER NUMBER, IF APPLICABLE
Name *(Last, First, MI)*:
Street Address Line 1:
Street Address Line 2:
City: State: Zip Code:
Importer Number:

SIGNATURE
X

DATE

SECTION V -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Optional)*

(Fill in "Protest No." Above if this is a Separate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Yes	No	CHECK BOX CORRESPONDING TO YOUR ANSWER TO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	☐	(A) Have you made prior request of a port director for a further review of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substantially similar merchandise?
☐	☐	(B) Have you received a final decision from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or do you have action involving such a claim pending befor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	(C) Have you previously received an advers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CBP or his designee or do you presently have a pending application for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JUSTIFICATION FOR FURTHER REVIEW UNDER THE CRITIERIA IN 19 CFR 174.24 AND 174.25 *(Include Applicable Rulings)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CBP Form 19 이의신청서 (Protest)

SECTION VI - DECISION *(CBP Use Only)*

☐ Approved* ☐ Denied for the following reason: ☐ Untimely filed ☐ Does not meet criteria ☐ Other, namely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EXPLANATION **When further review only is approved, the decision on the protest is suspended, pending issuance of a protest review decision.*
☐ Approved ☐ Rejected as non-protestable ☐ Denied in full for the following reason: ☐ Denied in part for the following reason: ☐ Untimely filed ☐ See attached protest review decision ☐ Other, namely	PROTEST EXPLANATION

TITLE OF CBP OFFICER	SIGNATURE OF CBP OFFICER	DATE

CONTINUATION OF SECTIONS II & V *(As Needed)*

SECTION II - DETAILED REASONS FOR PROTEST *(Continuation)*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ET FORTH SEPARATELY, (1) EACH DECISION PROTESTED, (2), THE CLAIM OF THE PROTESTING PARTY, AND (3) THE FACTUAL MATERIAL AND LEGAL ARGUMENTS WHICH ARE BELIEVED TO SUPPORT THE PROTEST. ALL SUCH MATERIAL AND ARGUMENTS SHOULD BE SPECIFIC. GENERAL STATEMENTS OF CONCLUSIONS ARE NOT SUFFICIENT.

SECTION V -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Optional) (Continuation)*

JUSTIFICATION FOR FURTHER REVIEW UNDER THE CRITIERIA IN 19 CFR 174.24 AND 174.25.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발행일 2026년 9월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총괄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장 윤호성

집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오윤진, 구지현, 황수한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Guide to Rules of Origin, Trade Measures, and
Customs Procedures for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